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 의 장
람	

제1438호 2019. 5. 13(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2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3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 6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 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2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16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3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0호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 35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7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48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6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8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6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8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176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9-92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제1항 규정에 따라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류 : 주택재건축
- 나.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대
- 나. 면적 : 15,244.5㎡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122번길 19, 상가2층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20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19. 5. 7.

6.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가. 대지면적 : 13,029.5m²

나. 건 폐 율 : 22.2117%

다. 용 적 률 : 446.0798%

라. 최고높이 : 83.35M

마.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7.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가. 공동주택(아파트) : 4개동(지하4층, 지상29층), 511세대

나. 업무시설(오피스텔) : 1개동(지하3층, 지상23층), 134호

8.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신규설치)

가. 도로 : 5개소, 1,847.7m²

나. 공용주차장 : 1개소, 368.1m²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9-93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449 외 1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05.13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9-05-1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1-1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449 (왕길동)	20090710	검대미'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12-163	인천광역시 서구 드림로 176 (백석동)	20150806	경인 아라뱃길(수로) 건설로 일부구간을 철거 및 폐쇄하고 신규 우회하는 도로 개설로 인한 도로구간 변경	
3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678	인천광역시 서구 사림로 71 (경서동)	20090922	이도로의 기점부근에 뱀섬이라는 뜻의 사림이라는 지역이 있으므로 사림로라 명명	
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13-5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527 (검암동)	20090922	서쪽으로 길게 뻗은 해안이라는 뜻으로 해안을 매립할 때 서곶이라는 이름을 남기고자 명명	
5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58-6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 212 (심곡동)	20090922	싱아풀이 많아 싱아고개로 불렸던 승학고개의 이름을 따 명명	
6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301-3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3 (심곡동)	20090922	심곡동의 동명을 따서 명명	
7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4-2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225 (왕길동)	20081231	완정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8-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 109 (당하동)	20081231	청마라는 자연부락의 이름을 따 명명함	
9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793-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744번길 14 (불로동)	20081231	검단로744번길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세번째로 분기되는 도로	
10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13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680번길 9 (공촌동)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1	인천광역시 서구 공촌동 304	인천광역시 서구 경명대로683번길 6-7 (공촌동)	20090710	경명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2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594-2	인천광역시 서구 도요지로189번길 141 (검암동)	20090922	도요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9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장모류근린공원
1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1-29	인천광역시 서구 로봣랜드로249번길 114-9 (청라동)	20091111	로봣랜드로 기점에서 약 2490m떨어진 지점에서 분기된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 607-2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472번길 9 (검암동)	20090922	승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72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간재울공원
15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1-13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9-6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94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56번안길 35 (마전동)	20081231	완정로156번길의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907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188번길 26 (마전동)	20081231	완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099-4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48번길 15 (당하동)	20081231	청마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4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56-2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한대로161번길 9-15 (청라동)	20140804	청라국제도시 이미지 부각 및 청라한대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61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89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항목에 추가

나.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안 제5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개정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안전총괄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소 : (우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안전총괄실)

- 전화번호 : 032)560-2883 (팩스 : 032)560-2735)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사회재난 피해를 수습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규정 신설(안 제4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항목에 추가
 - 장례비, 치료비 지원금액은 장례 또는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으로 산정하며,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
-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신설 (안 제5조)
 -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원인제공자에게 청구 가능
-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 구청의 과도한 구상 청구에 대한 대항 및 반환 청구 명시
- ※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신설(안 부칙 제2조)
 - 개정 조례 시행 전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나. 관계 법령 발췌 : “별지 참조”

라. 예 산 조 치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자(이하 “재난 피해자”라 한다)”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피해의”를 “피해에 대한”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원기준)”을 “(지원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제4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 중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하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를 “원인제공자”로 하여 제5조를 제7조로 하고, 제5조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제1항 중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를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로 하고 “재난피해자로부터”를 “피해주민으로부터”으로 하며, 제2항 중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을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으로 하고, 제3항 중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하며, 제5항 중 상단 “재난피해자가”를 “피해주민이”로, 중단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각각 한다.

제7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제8조 중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을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재난피해자”를 “피해주민”으로, “말한다)”를 “말한다)의”로 하고,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9조 중 “제6조제6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하고, “생활안정지원등”을 “생활안정 지원 등”으로 하며,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을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

제10조,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제12조, 제13조와 제14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4.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 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3. -----
----- 피해주민-----

② -----
----- 피해에 대한 -----
-----.

제4조(지원 기준) ① -----

----- 피해주민-----
-- 위하여 -----
-----.

1. ~ 3. (현행과 같음)

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
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

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
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
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
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
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
인 금액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
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
는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
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
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피해주민-----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 원인제공자-----

 -----.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 피해주민으로부터-----.

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

 -----.

③ ----- 피해주민이

 -----.

1. 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⑥ (생략)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 8. (생략)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

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피해주민이 -----

----- 피해주민-----

-----.

⑥ (현행과 같음)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8조제6항-----

-----.

1. ~ 8. (현행과 같음)

제10조(지급방법) --- 제8조제6항

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 피해주

민 -----

말한다)의 -----

-----.

----- 피해주민-----

-----.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

제12조 (생략)

제11조(환수) ---- 제8조제6항 ----
 ----- 생활안정지원 등-----
 -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

제12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18. 9. 18] [법률 제15764호, 2018. 9. 1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 044-205-4126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2. 29., 2011. 3. 29., 2012. 2. 22., 2013. 3. 23., 2013. 8. 6., 2014. 11. 19., 2014. 12. 30., 2015. 7. 24., 2016. 1. 7., 2017. 1. 17., 2017. 7. 26., 2018. 9. 18.>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이하 "국가기반체계"라 한다)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① 해당 관할 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도대책본부"라 한다)를 두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구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② 시·도대책본부 또는 시·군·구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여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앙대책본부장에게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건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0조제1항의 대피명령을 방해하거나 위반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6., 2017. 1. 17.>

1. 자연재난

2.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의 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의 구호 및 재난의 복구비용 부담기준에 따라 국고의 부담금 또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의연금 등으로 충당하되,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6., 2014. 12. 30., 2017. 1. 17.>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產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회재난으로서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 1. 17.>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의 원인이 되는 사회재난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7. 1. 17.>

⑦ 제3항 각 호에 따라 지원되는 금품 또는 이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9-796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정이유

- 2019년 7월 시행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어를 변경되고자 함.
- 기존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2건) 일괄정비 (부칙)
- 현 자동판매기 시장수요에 맞추어 조례정비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주체 명확화

2. 주요내용

- 장애인등급제 개편사항(1~6급→중증, 경증)을 반영하고 장애인 분야 우선계약 대상자 범위 확대 개정(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관련)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현행과 같음)	순위	장애인	(현행과 같음)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현행과 같음)

- 기존 장애등급 적용,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괄 정비
- 현 자동판매기의 수요가 확대(식음료용외 생필품 등)됨에 따라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에서 “식음료용” 삭제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를 “설치의 허가와 위탁” 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자립지원과장)에게 2019년 6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의견제출 및 문의전화
 - 주 소: (우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 전화번호: 032 - 560 - 4313(팩스 032 - 560 - 2742)

- 붙임 1. 주요 관련법령 1부.
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1]

주요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시행 2019. 7. 1.]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생업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이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장애인이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신청하면 그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장애인이 우편법령에 따라 국내 우표류 판매업 계약 신청을 하면 우편관서는 그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접 그 사업을 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기 위하여 설치 장소와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19. 7. 1.]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내 용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개편('19. 7. 1.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에 따라 관련용어 정비 필요
- 기존 장애등급을 적용하여 운영 중인 우리 구 조례(2건) 일괄정비 (부칙)
- 현 자동판매기 시장수요(식음료용외 생필품 등 확대)에 맞추어 조례 정비
-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주체 명확화

2. 주요내용

- 조례명, 조례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및 제6조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를 “자동판매기” 로 개정한다.
- 제1조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으로 한다.
- 제2조, 제3조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으로 한다.
-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관련)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관련)		
순위	장애인	(현행과 같음)	순위	장애인	(현행과 같음)
1	장애등급이 1~2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2	장애등급이 3~4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3	장애등급이 5~6급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현행과 같음)	3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현행과 같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42조(생업 지원)
-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제4조 및 제6조 중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자동판매기” 로 한다.

제1조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을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으로 한다.

제2조, 제3조 중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때에는” 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과 자동 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 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한다.

【별표】

우선 계약 순위(제5조 관련)

순 위	장 애 인	노 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70세 이상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65세 ~ 69세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3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u>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u>한부모가족복지단체</u>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816호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차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7-195호(2017. 8. 21.)로 사업시행인가 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차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2차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07-1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13. ~ 2019. 5. 27. (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서구청 도시개발과 방문 또는 전화(☎560-4784)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및 조합사무실(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032-565-6343)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9-820호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69호(2018.7.16.)로 사업시행인가 된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 등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영업권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 업 명 : 서곶근린공원 조성공사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산20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서구청장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19. 5. 14.~ 2019. 5. 29.(14일 이상)
6. 열람장소 및 방법 : 서구청 공원녹지과 방문 또는 전화 (☎560-4494)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서구청 공원녹지과(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 서구청 제2청사 4층)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조서									
사업명: 서곶근린공원 조성사업									
일련번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주소	성명(지분율)	주소	성명	
1	공촌동	산143-2	임야	78	인천시 서구 경서동 210	이용덕(1/1)	-	-	
2	공촌동	산143-7	임야	21	인천시 서구 경서동 210	이용덕(1/1)	-	-	
3	심곡동	산20	임야	85.66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	권리관계:압류
4	심곡동	산20-1	임야	0.12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환경보전과)	권리관계:압류
5	심곡동	산20-2	임야	2.8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	권리관계:압류
6	심곡동	산20-3	임야	12.4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	권리관계:압류
7	심곡동	산20-4	임야	2.8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	권리관계:압류
8	심곡동	산20-5	임야	1.07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28-10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5층	동남기업주식회사 (106/19,537)	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17-7	기술신용보증기금	권리관계:가압류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인천시 연수구(세무과)	권리관계:압류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배치 및 우리구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과 현안 업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045명 ⇒ 1,165명 (증 1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26명 ⇒ 1,144명 (증 118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6급 : 24%이내 ⇒ 24.5%이내
- 7급 : 34%이내 ⇒ 33.5%이내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 1,039명 ⇒ 1,159명 (증 120명)
- 4급 : 6명 ⇒ 7명 (증 1명)
- 5급 : 64명 ⇒ 68명 (증 4명)
- 6급 이하 : 968명 ⇒ 1,083명 (증 115명)

※ 추가소요 인건비 : 5,435,719천원 (내역 비용추계서 별첨)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배치 및 우리구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과 현안 업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 재배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안 제2조]

- 1,045명 ⇒ 1,165명 (증 120명)

· 집행기관의 정원 : 1,026명 ⇒ 1,144명 (증 118명)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안 별표 2)

- 일반직공무원

· 6급 : 24%이내 ⇒ 24.5%이내

· 7급 : 34%이내 ⇒ 33.5%이내

○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 [안 별표 3]

- 일반직 : 1,039명 ⇒ 1,159명 (증 120명)

· 4급 : 6명 ⇒ 7명 (증 1명)

· 5급 : 64명 ⇒ 68명 (증 4명)

· 6급 이하 : 968명 ⇒ 1,083명 (증 115명)

※ 추가소요 인건비 : 5,435,719천원 (내역 비용추계서 별첨)

3. 참고사항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045명”을 “1,16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 중 “1,026명”을 “1,144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9명”을 “21
 명”으로 한다.

별표 2와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비 율	1% 이내	7% 이내	24.5% 이내	33.5% 이내	29% 이내	5% 이상

비 고 :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2. 연구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이내	97%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 분	5급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25% 이내		25% 이내	25% 이내	25% 이상

비 고

1.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2. 동의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직속기관	출장소	동
			기 구			
총 계	1,165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1,159			-		
2급	1	1				
4급	7	5	1	1		
5급	68	38	2	6	1	21
6급 이하 계	1,083			-		
연구직 계	1					
연구사	1			-		
별정직 계	4			-		
5급 상당	1			-		
6급 상당 이하 계	3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 <u>1,045명</u>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u>1,026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u>19명</u>	제2조(정원의 총수) ----- ----- ----- <u>1,165명</u> ----- -----. 1. ----- <u>1,144명</u> 2. ----- <u>21명</u>

[붙임 2]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 분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5,435,719,357							
1. 인건비	4,724,882,657							
가. 기본급	3,819,392,000	○ 4급(연봉제)	83,590,000	1			83,590,000	
		○ 5급(연봉제)	73,825,000	4			295,300,000	
		○ 6급(23호봉)	3,884,200	30		12	1,398,312,000	
		○ 7급(11호봉)	2,747,300	23		12	758,254,800	
		○ 8급(5호봉)	1,959,700	20		12	470,328,000	
		○ 9급(2호봉)	1,614,300	42		12	813,607,200	
나. 상여금	230,374,457	○ 정근수당	3,735,802,000	120	0.08	2	230,374,457	90%평균
다. 정액수당	675,116,200							
1)가족수당	43,776,000	○ 배우자	40,000	60	0.78	12	22,464,000	
		○ 존비속	20,000	60	1.48	12	21,312,000	
2)정근수당가산금	70,560,000	○ 25년 이상	130,000	5		12	7,80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15		12	19,800,000	
		○ 15년~20년미만	80,000	15		12	14,400,000	
		○ 10년~15년미만	60,000	23		12	16,560,000	
		○ 5년~10년미만	50,000	20		12	12,000,000	
3) 정액급식비	187,200,000	○ 일반직	130,000	120		12	187,200,000	
4) 명절휴가비	373,580,200	○ 명절휴가	3,735,802,000		0.05	2	373,580,200	
2. 직무수행경비	213,24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9,000,000	○ 4급	350,000	1		12	4,200,000	
		○ 5급	100,000	4		12	4,800,000	
나. 직급보조비	204,240,000	○ 4급	400,000	1		12	4,800,000	
		○ 5급	250,000	4		12	12,000,000	
		○ 6급	155,000	30		12	55,800,000	
		○ 7급	140,000	23		12	38,640,000	
		○ 8급	125,000	20		12	30,000,000	
		○ 9급	125,000	42		12	63,000,000	
3. 포상금	497,596,700							
가. 성과상여금	497,596,700	○ 4급(연봉제)	6,290,220	1	1.25	1	7,862,775	A등급
		○ 5급(연봉제)	5,305,020	4	1.25	1	26,525,100	A등급
		○ 6급	4,168,270	30	1.25	1	156,310,125	A등급
		○ 7급	3,543,900	23	1.25	1	101,887,125	A등급
		○ 8급	2,943,890	20	1.25	1	73,597,250	A등급
		○ 9급	2,503,130	42	1.25	1	131,414,325	A등급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배치 및 우리구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과 현안 업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1)
 - 총 정원 : 1,045명 ⇒ 1,165명 (증 120명)
 - 일반직 : 1,039명 ⇒ 1,159명 (증 120명)
 - 4급 : 6명 ⇒ 7명(증 1명)
 - 5급 : 64명 ⇒ 68명(증 4명)

- 6급 : 249명 ⇒ 279명(증 30명)
- 7급 : 323명 ⇒ 346명(증 23명)
- 8급 : 268명 ⇒ 288명(증 20명)
- 9급 : 128명 ⇒ 170명 (증 42명)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 제안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배치 및 우리구 민선7기 핵심가치 실현과 현안 업무 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필요인력을 증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안 별표 1)
 - 총 정원 : 1,045명 ⇒ 1,165명 (증 120명)
 - 일반직 : 1,039명 ⇒ 1,159명 (증 120명)
 - 4급 : 6명 ⇒ 7명(증 1명)
 - 5급 : 64명 ⇒ 68명(증 4명)
 - 6급 : 249명 ⇒ 279명(증 30명)
 - 7급 : 323명 ⇒ 346명(증 23명)
 - 8급 : 268명 ⇒ 288명(증 20명)
 - 9급 : 128명 ⇒ 170명 (증 42명)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참조”
- 다. 예산수반사항 : “별지 비용추계서 참조”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직급·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급별 \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총 계	1165	752	21	86	36	270	(9)
정 무 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 반 직 계	1159	746	21	86	36	270	(9)
2급 소계	1	1					
이 사 관	1	1					
4급 소계	7	5	1	1			
서 기 관	2	1	1				
기 술 서 기 관	2	1		1			
서 기 관 · 기 술 서 기 관	3	3					
5급 소계	68	38	2	6	1	21	
행 정	15	13	2				
의 무	2			2			
운 전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4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녹 지	1					1	
행 정 · 보 건	1	1					
행 정 · 환 경	2	2					
행 정 · 시 설	9	9					
행 정 · 사 회 복 지 · 공 업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농 업	1					1	
행 정 · 사 회 복 지 · 녹 지	3	1				2	
행 정 · 사 회 복 지 · 보 건	3					3	
행 정 · 사 회 복 지 · 환 경	2					2	
행 정 · 사 회 복 지 · 시 설	4					4	
행 정 · 사 회 복 지 · 방 송 통 신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3	1				2	
행 정 · 공 업 · 시 설	1	1					

직급별	기관별							비고 (행정복지)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행정 · 녹지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환경		2	1				1	
행정 · 보건 · 시설		1					1	
행정 · 환경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무 · 간호		1			1			
행정 · 공업 · 농업 · 시설		1				1		
행정 ·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3			3			
6급 소계		279	198	8	21	8	44	
행 정		89	72	4	1	1	11	
세 무		16	14			2		
전 산		1	1					
사 회 복 지		14	14					
속 기		2		2				
공 업		7	7					
농 업		1	1					
녹 지		6	6					
수 의		1	1					
보 건		5	4		1			
의 료 기 술		2			2			
간 호		1			1			
환 경		6	6					
시 설		21	19			2		
방 송 통 신		2	2					
운 전		4	2	1			1	
기 계 운 영		1	1					
사 무 운 영		1	1					
행 정 · 세 무		12	9				3	
행 정 · 사 회 복 지		32	9	1			22	
행 정 · 공 업		2	2					
행 정 · 농 업		1				1		
행 정 · 녹 지		2	1				1	
행 정 · 보 건		5	2			1	2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행정 · 환경	6	4					2	
행정 · 시설	10	10						
행정 · 방송통신	2	1					1	
사회복지 · 간호	1				1			
공업 · 환경	1	1						
녹지 · 시설	1	1						
보건 · 간호	1				1			
보건 · 환경	1	1						
식품위생 · 간호	1				1			
의료기술 · 간호	3				3			
환경 · 시설	1	1						
시설 · 방재안전	1	1						
행정 · 세무 · 농업	1						1	
행정 · 공업 · 시설	2	1				1		
행정 · 보건 · 간호	1				1			
행정 · 보건 · 환경	1	1						
행정 · 환경 · 시설	2	2						
보건 · 의료기술 · 간호	7				7			
식품위생 · 의료기술 · 간호	1				1			
보건 · 의료기술 · 약무 · 간호	1				1			
7급 소계	346	234	5		19	15	73	(1)
행정	132	83	4			2	43	(1)
세무	18	18						
전산	5	5						
사회복지	34	23					11	
공업	10	8				2		
농업	2	1				1		
녹지	8	7				1		
수의	1	1						
해양수산	1	1						
보건	17	11			5	1		
의료기술	4				4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간 호	4				4			
환 경	13	13						
시 설	52	47				5		
방 재 안 전	1	1						
방 송 통 신	2	2						
운 전	16	1			1	1	13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 계 운 영	2	2						
사 무 운 영	8	2	1			2	3	
행 정 · 세 무	3	2					1	
행 정 · 사 회 복 지	4	2					2	
행 정 · 시 설	2	2						
농 업 · 수 의	1	1						
보 건 · 간 호	1				1			
식 품 위 생 · 의 료기 술	2				2			
보 건 · 의 료기 술 · 간 호	2				2			
8급 소계	288	170	4		34	8	72	(5)
행 정	117	71	3		2		41	(5)
세 무	9	9						
전 산	2	2						
사 회 복 지	45	19			2		24	
공 업	7	7						
농 업	1	1						
녹 지	6	6						
보 건	7	3			2	2		
의 료 기 술	1				1			
간 호	19				19			
환 경	13	13						
시 설	28	23				5		
방 송 통 신	3	3						
운 전	6		1		1		4	
전 화 상 담 운 영	1	1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보건소	출장소	동	비고 (행정복지)
직급별	기록 연구사	1	1					
	별 정 직 계	4	4					
	5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8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9급 상당 소계	1	1					
	비 서	1	1					

[붙임 2]

비용소요 추계서

(단위 : 원, 명, 월)

구 분	소요비용	산 출 근 거					비 고	
		내역	단가	인원	비율 등	월(회)수		계
총계	5,435,719,357							
1. 인건비	4,724,882,657							
가. 기본급	3,819,392,000	○ 4급(연봉제)	83,590,000	1			83,590,000	
		○ 5급(연봉제)	73,825,000	4			295,300,000	
		○ 6급(23호봉)	3,884,200	30		12	1,398,312,000	
		○ 7급(11호봉)	2,747,300	23		12	758,254,800	
		○ 8급(5호봉)	1,959,700	20		12	470,328,000	
		○ 9급(2호봉)	1,614,300	42		12	813,607,200	
나. 상여금	230,374,457	○ 정근수당	3,735,802,000	120	0.08	2	230,374,457	90%평균
다. 정액수당	675,116,200							
1)가족수당	43,776,000	○ 배우자	40,000	60	0.78	12	22,464,000	
		○ 존비속	20,000	60	1.48	12	21,312,000	
2)정근수당가산금	70,560,000	○ 25년 이상	130,000	5		12	7,800,000	
		○ 20년~25년미만	110,000	15		12	19,800,000	
		○ 15년~20년미만	80,000	15		12	14,400,000	
		○ 10년~15년미만	60,000	23		12	16,560,000	
		○ 5년~10년미만	50,000	20		12	12,000,000	
3) 정액급식비	187,200,000	○ 일반직	130,000	120		12	187,200,000	
4) 명절휴가비	373,580,200	○ 명절휴가	3,735,802,000		0.05	2	373,580,200	
2. 직무수행경비	213,240,000							
가. 직책급업무추진비	9,000,000	○ 4급	350,000	1		12	4,200,000	
		○ 5급	100,000	4		12	4,800,000	
나. 직급보조비	204,240,000	○ 4급	400,000	1		12	4,800,000	
		○ 5급	250,000	4		12	12,000,000	
		○ 6급	155,000	30		12	55,800,000	
		○ 7급	140,000	23		12	38,640,000	
		○ 8급	125,000	20		12	30,000,000	
		○ 9급	125,000	42		12	63,000,000	
3. 포상금	497,596,700							
가. 성과상여금	497,596,700	○ 4급(연봉제)	6,290,220	1	1.25	1	7,862,775	A등급
		○ 5급(연봉제)	5,305,020	4	1.25	1	26,525,100	A등급
		○ 6급	4,168,270	30	1.25	1	156,310,125	A등급
		○ 7급	3,543,900	23	1.25	1	101,887,125	A등급
		○ 8급	2,943,890	20	1.25	1	73,597,250	A등급
		○ 9급	2,503,130	42	1.25	1	131,414,325	A등급

※ 수당 중 위험근무, 대우공무원, 관리업무, 특수업무, 민원업무, 전산업무, 장려, 의회사무, 의료업무, 동근무, 사회복지업무, 초과근무 등 제수당은 개인별 격차가 광범위하고 산발적이므로 추계하지 아니함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담당관·부서 신설,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신설 사무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

- 국 (1) : 환경안전국
- 담당관(1) : 소통협력담당관
- 과 (2) :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 명칭변경

- 국 : 총 무 국 → 자 치 행 정 국
- 경 제 환 경 국 → 경 제 교 통 국
- 도 시 관 리 국 → 미 래 도 시 국
- 실 : 안 전 총 괄 실 → 안 전 총 괄 과
- 과 : 자 립 지 원 과 → 장 애 인 복 지 과
- 인 재 육 성 과 → 교 육 혁 신 과
- 아 동 청 소 년 과 → 아 동 행 복 과
- 교 통 민 원 과 → 차 량 민 원 과
- 건 설 과 → 도 시 기 반 과
- 주 택 관 리 과 → 주 택 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 분야별 컨트롤타워 기능 지정
: 복지,교육,출산,환경,안전,경제,도시기반,도시재생
- 공간정보(GIS) : 기획예산실 ⇒ 토지정보과
- 저출산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 기획예산실 ⇒ 가정교육과
-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업무 : 기획예산실 ⇒ 노인복지과
- 50플러스일자리업무 : 기획예산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 총무과 ⇒ 재무과
- 자원봉사업무 : 복지정책과 ⇒ 총무과
- 청년관련업무 : 아동청소년과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먹는샘물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 위생과 ⇒ 환경관리과
- 차량 무단방치 : 주차관리과 ⇒ 차량민원과
-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 차량민원과 ⇒ 주차관리과
- 구청사 전기설비시설 유지관리 : 도시기반과 ⇒ 재무과

- 디자인거리조성사업 : 기업지원과 ⇒ 도시재생경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에 따른 국·담당관·부서 신설,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신설 사무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신 설

- 국 (1) : 환경안전국
- 담당관(1) : 소통협력담당관
- 과 (2) :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 명칭변경

- 국 : 총 무 국 → 자 치 행 정 국
- 경 제 환 경 국 → 경 제 교 통 국
- 도 시 관 리 국 → 미 래 도 시 국
- 실 : 안 전 총 괄 실 → 안 전 총 괄 과
- 과 : 자 립 지 원 과 → 장 애 인 복 지 과
- 인 재 육 성 과 → 교 육 혁 신 과
- 아 동 청 소 년 과 → 아 동 행 복 과
- 교 통 민 원 과 → 차 량 민 원 과
- 건 설 과 → 도 시 기 반 과
- 주 택 관 리 과 → 주 택 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 분야별 컨트롤타워 기능 지정

- : 복지,교육,출산,환경,안전,경제,도시기반,도시재생
- 공간정보(GIS) : 기획예산실 ⇒ 토지정보과
 - 저출산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 기획예산실 ⇒ 가정보육과
 -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업무 : 기획예산실 ⇒ 노인복지과
 - 50플러스일자리업무 : 기획예산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 총무과 ⇒ 재무과
 - 자원봉사업무 : 복지정책과 ⇒ 총무과
 - 청년관련업무 : 아동청소년과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먹는샘물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 위생과 ⇒ 환경관리과
 - 차량 무단방치 : 주차관리과 ⇒ 차량민원과
 -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 차량민원과 ⇒ 주차관리과
 - 구청사 전기설비시설 유지관리 : 도시기반과 ⇒ 재무과
 - 디자인거리조성사업 : 기업지원과 ⇒ 도시재생경관과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장 및 단장·실장·과장의 직급 등)”을“(국장 및 단장·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본청의 국장·단장·실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과·소·동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를“본청의 국장 및 단장·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각 단·실·담당관·과의 사무분장, 직속 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과장의 직급, 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으로 한다.

제3조의 제목“(단·실·국의 설치)”를“(단·실·담당관·국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안전총괄실, 감사실, 총무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을“감사실, 소통협력담당관, 자치행정국, 복지문화국, 환경안전국, 경제교통국, 미래도시국”으로 한다.

제4조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구청장 직소민원 관리

2. 갈등조정관리
3. 소통1번가 총괄
4. 민원분석 톨 운영
5.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 등
6.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만족도 조사·평가

제6조의 제목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1호부터 제12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1.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
12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123. 공간정보(GIS) 운영

제7조 제1항 중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를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15호부터 제1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5. 인구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116. 골드세대, 신중년, 고령화관련 정책
117.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의2의 제목 “(경제환경국)”을 “(환경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제환경국에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를 “환경안전국에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

태하천과, 안전총괄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 환경국장”을 “환경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56호부터 제62호까지를 각각 삭제 한다.

제7조의2제2항에 제70호부터 제8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71.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72.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73.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74.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75.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6.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리
77.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78. 비상대책 업무
79.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80.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81.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
82. 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83. 하수도 사용료 과징
84.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에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육성 및 관리
5.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7.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
8. 양곡 수급, 조정
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10. 노동단체 지도육성
11. 에너지 이용화법 관련사무
12.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3.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
1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8.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19.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20.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21.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22.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23.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
24.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25.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
26.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27.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제8조의 제목 “(도시관리국)”을 “(미래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를 “미래도시국에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로,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6호, 제7호 및 제44호부터 제51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6호 중 “공용건축물”을 “공공용건축물”로 하고, 같은 항 제68호를 삭제한다.

제17조에 제15호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세무(재산세,등록면허세,각종 세무 제증명) 업무
16. 녹지(공원,산림) 유지관리 업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장 및 단장·실장·과장의 직급 등) 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국장·단장·실장의 직급, 본청·직속 기관·출장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실·과·소·동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② (생략)</p>	<p>제2조(국장 및 단장·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 등) ① ----- ----- 본청의 국장 및 단장·실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각 단·실·담당관·과의 사무분장, 직속기관의 사무분장 및 소장·과장의 직급, 출장소의 사무분장 및 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사무분장 및 동장의 직급 등에-----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단·실·국의 설치) 구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기획단, 기획예산실, <u>안전총괄실</u>, 감사실, 총무국,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도시관리국을 둔다.</p>	<p>제3조(단·실·담당관·국의 설치) -- ----- ----- <u>감사실</u>, <u>소통협력담당관</u>, <u>자치행정국</u>, <u>복지문화국</u>, <u>환경안전국</u>, <u>경제교통국</u>, <u>미래도시국</u>-----.</p>
<p>제4조(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5. (생략)</p> <p>26. <u>인구정책에 관한 사항</u></p> <p>27. <u>공간정보(GIS) 운영</u></p> <p>28.·29. (생략)</p>	<p>제4조(기획예산실) ----- -----.</p> <p>1. ~ 25. (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28.·29. (현행과 같음)</p>
<p>제5조(안전총괄실) 안전총괄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삭 제></p>

1.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2.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3.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4.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5.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획
수립·집행
6.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
리
8.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9. 비상대책 업무
10.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1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신 설>

제5조의4(소통협력담당관) 소통협력
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현장구청장실 운영 및 구청장 직
소민원 관리
2. 갈등조정관리
3. 소통1번가 총괄
4. 민원분석 톨 운영
5.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
니터링·예보 등
6. 민원처리실태 점검 및 민원만족
도 조사·평가

제6조(총무국) ① 총무국에 총무과, 홍보미디어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0.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7조(복지문화국) ①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자립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청소년과,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를 둔다.

② 복지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4.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제7조의2(경제환경국) ① 경제환경국에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일자리과,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 위생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

② 자치행정국장-----

1. ~ 120. (현행과 같음)

121.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에 관한 사무

12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

123. 공간정보(GIS) 운영

제7조(복지문화국) ① -----
----- 장애인복지과, 교육혁신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② -----

1. ~ 114. (현행과 같음)

115. 인구 및 출산정책에 관한 사항

116. 골드세대, 신중년, 고령화관련 정책

117.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7조의2(환경안전국) ① 환경안전국에 클린도시과, 환경관리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② 경제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육성 및 관리
5.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7.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
8. 양곡 수급, 조정
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10. 노동단체 지도육성
11. 에너지 이용화법 관련사무
12.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3. · 14. 삭 제
15. ~ 55. (생략)
56.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
57.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58.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60.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② 환경안전국장-----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15. ~ 55. (현행과 같음)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 <삭 제>

61.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62.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63. ~ 6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삭제>

<삭제>

64. ~ 69. (현행과 같음)

70.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71. 안전관리 요소에 대한 점검 및
지도

72.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73.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74. 기반체계보호관련 안전관리계
획 수립·집행

75.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실시

76. 민방위대의 조직편성 및 운영관
리

77.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관리

78. 비상대책 업무

79. 재해구호에 관한 업무

80.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81.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

82. 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83. 하수도 사용료 과징

84.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

제7조의3(경제교통국) ① 경제교통국
에 경제에너지과, 기업지원과, 사회

적경제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경제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단위 경제발전 계획 수립
2. 상공업 진흥계획 수립 실시
3. 중소기업 육성 및 공산품 품질관리
4. 시장육성 및 관리
5. 연료수급 및 가스안전관리
6.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7. 농업, 잠업, 축산, 농업이용보전, 수리시설에 관한 업무
8. 양곡 수급, 조정
9. 제조담배 소매인의 지정 및 지정 취소
10. 노동단체 지도육성
11. 에너지 이용화법 관련사무
12. 건전소비문화 정착사업
13. 지역공동체 총괄기획 및 조정
14. 일자리창출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5.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7.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18. 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
- 19.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 20.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수조사 및 부과징수
- 21.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자재원 확보
- 22.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
- 23.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
- 24.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
- 25.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
- 26.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
- 27.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

제8조(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를 둔다.(개정 1999. 9. 30, 2000. 11. 14, 2003. 8. 2, 2004. 3.24, 개정 2006. 6.26, 2007.6.19, 2014. 2.24, 2015. 3.9, 2018.4.18.)

② 도시관리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략)
4. 하천·공유수면 유지관리
5. (생략)

제8조(미래도시국) ① 미래도시국에 도시기반과, 건축과, 주택과-----
----- 공원녹지
과-----

② 미래도시국장-----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5. (현행과 같음)

<u>6. 하수도 사용료 과징</u>	<삭 제>
<u>7. 하수도사업비 특별회계 운영</u>	<삭 제>
8. 삭 제	
9. ~ 43. (생 략)	9. ~ 43. (현행과 같음)
<u>44. 교통유발부담금 과징대상물 전 수조사 및 부과징수</u>	<삭 제>
<u>45. 장·단기 주차시설 확충계획 투 자재원 확보</u>	<삭 제>
<u>46. 불법주차 단속 및 과태료 과징</u>	<삭 제>
<u>47. 교통체계관리(T.S.M) 지역사업 추진</u>	<삭 제>
<u>48. 교통관련 소규모 투자사업 추진</u>	<삭 제>
<u>49. 자동차 운송사업 및 알선사업에 관한 사무</u>	<삭 제>
<u>5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무</u>	<삭 제>
<u>51. 기타 교통에 관한 사항</u>	<삭 제>
52. ~ 65. (생 략)	52. ~ 65. (현행과 같음)
<u>66. 공용건축물 공사에 관한 업무</u>	66. <u>공공용건축물</u> -----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u>68. 자연재난 방재용 배수펌프장 (빗물펌프장) 시설물 관리 운영</u>	<삭 제>
제17조(소관사무) 출장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7조(소관사무) ----- -----.
1. ~ 14. (생 략)	1. ~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u>세무(재산세,등록면허세,각종 세무 제증명) 업무</u>
<신 설>	16. <u>녹지(공원,산림) 유지관리 업무</u>

의 건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5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국·담당관·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2. 주요내용

- 신 설
 - 국 (1) : 환경안전국
 - 담당관(1) : 소통협력담당관

- 과 (2) :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 명칭변경

- 국 : 총 무 국 → 자치행정국
경제환경국 → 경제교통국
도시관리국 → 미래도시국
- 실 : 안전총괄실 → 안전총괄과
- 과 : 자립지원과 → 장애인복지과
인재육성과 → 교육혁신과
아동청소년과 → 아동행복과
교통민원과 → 차량민원과
건설과 → 도시기반과
주택관리과 → 주택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 분야별 컨트롤타워 기능 지정
: 복지,교육,출산,환경,안전,경제,도시기반,도시재생
- 공간정보(GIS) : 기획예산실 ⇒ 토지정보과
- 저출산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 기획예산실 ⇒ 가정보육과
-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업무 : 기획예산실 ⇒ 노인복지과
- 50플러스일자리업무 : 기획예산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 총무과 ⇒ 재무과
- 자원봉사업무 : 복지정책과 ⇒ 총무과
- 청년관련업무 : 아동청소년과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먹는샘물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 위생과 ⇒ 환경관리과

- 차량 무단방치 : 주차관리과 ⇒ 차량민원과
-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 차량민원과 ⇒ 주차관리과
- 구청사 전기설비시설 유지관리 : 도시기반과 ⇒ 재무과
- 디자인거리조성사업 : 기업지원과 ⇒ 도시재생경관과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국·담당관·부서 신설
- 부서 기능조정 및 과 명칭 변경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2. 주요내용

○ 신 설

- 국 (1) : 환경안전국
- 담당관(1) : 소통협력담당관
- 과 (2) : 생태하천과, 교통정책과

○ 명칭변경

- 국 : 총 무 국 → 자 치 행 정 국
- 경 제 환 경 국 → 경 제 교 통 국
- 도 시 관 리 국 → 미 래 도 시 국
- 실 : 안 전 총 괄 실 → 안 전 총 괄 과
- 과 : 자 립 지 원 과 → 장 애 인 복 지 과
- 인 재 육 성 과 → 교 육 혁 신 과
- 아 동 청 소 년 과 → 아 동 행 복 과
- 교 통 민 원 과 → 차 량 민 원 과
- 건 설 과 → 도 시 기 반 과
- 주 택 관 리 과 → 주 택 과

○ 신설사무 및 사무조정

- 분야별 컨트롤타워 기능 지정
: 복지,교육,출산,환경,안전,경제,도시기반,도시재생
- 공간정보(GIS) : 기획예산실 ⇒ 토지정보과
- 저출산대응계획 및 출산장려정책 : 기획예산실 ⇒ 가정보육과
- 골드세대, 신중년 정책 등 고령화업무 : 기획예산실 ⇒ 노인복지과
- 50플러스일자리업무 : 기획예산실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청사 공사용역 및 공사감독 총괄 : 총무과 ⇒ 재무과
- 자원봉사업무 : 복지정책과 ⇒ 총무과
- 청년관련업무 : 아동청소년과 ⇒ 사회적경제일자리과
- 먹는샘물공동시설관리 및 수질검사 : 위생과 ⇒ 환경관리과
- 차량 무단방치 : 주차관리과 ⇒ 차량민원과
- 화물자동차(건설기계)주박차 단속 : 차량민원과 ⇒ 주차관리과
- 구청사 전기설비시설 유지관리 : 도시기반과 ⇒ 재무과
- 디자인거리조성사업 : 기업지원과 ⇒ 도시재생경관과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5(소통협력담당관실) ①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조의 제목“(총무국)”을“(자치행정국)”으로 한다.

제5조 중 “아동청소년과장, 인재육성과장,”을 “교육혁신과장, 아동행복과장,”으로, “자립지원과장”을 “장애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경제환경국)”을“(환경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클린도시과장”을 “클린도시과장”으로, “자원순환과장”을 “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 제목“(도시관리국)”을“(미래도시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설과장”은 “도시기반과장”으로, “주택관리과장”은 “주택과장”으로,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교통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실·관·과의 사무분장)”을“(단·실·담당관·과의 사무분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실·관·”를 “단·실·담당관·”로 한다.

제12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를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로, “가정3동장”을 “가정3동장, 가좌1동장”으로, “가좌1동장, 가좌4동장”을 “가좌4동장”으로 한다.

별표 1,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의2(안전총괄실) 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u>[중전 제3조의1에서 이동, 중전 제3조의1은 삭제 2016.7.1.]</p> <p><u><신 설></u></p>	<p><u><삭 제></u></p> <p><u>제3조의5(소통협력담당관실) ① 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4조(<u>총무국</u>) (생략)</p>	<p>제4조(<u>자치행정국</u>) (현행과 같음)</p>
<p>제5조(<u>복지문화국</u>)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아동청소년과장, 인재육성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복지정책과장, 노인복지과장, 자립지원과장, 가정보육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u></p>	<p>제5조(<u>복지문화국</u>) ----- ----- <u>교육혁신과장, 아동행복과장, -----</u> ----- <u>장애인복지과장</u>----- -----.</p>
<p>제5조의2(<u>경제환경국</u>)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u>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클린도시과장과 환경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u></p>	<p>제5조의2(<u>환경안전국</u>) ----- ----- <u>클린도시과장</u>----- ----- ----- <u>생태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u></p>

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하며, 이중 클린도시과장은 악취담당관을 겸직한다.

<신 설>

제6조(도시관리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택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도시개발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

제5조의3(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사회적경제일자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차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미래도시국) -----
-----도시기반과장---

-----주택과장-----

[별표 1]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미래기획단	1.	구정현안에 대한 전략사업 추진
	2.	국·시책사업 현안사항 관리
		가.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나.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다. 서북부환승센터 조성사업
		라. 청라국제도시 개발사업
		마.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바. 가정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사. 경인아라뱃길 조성사업
		아.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사업 관리
		자. 광역도로사업 관리 등
	3.	국·시책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협의(완료된 사업 제외)
	4.	공공기관 서구 유치
	5.	민간투자 서구 유치
	6.	생태문화관광벨트사업
	7.	지역상생발전사항
8.	미래소통 업무	
9.	기타 현안사항(군부대 이전지 활용방안)	

[별표 1]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획 예 산 실	1.	구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2.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3.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4.	지시사항 처리총괄(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시장, 구청장 등)
	5.	공무원 관내외 출장·통제
	6.	기구직제 및 정원관리
	7.	기구 및 정원조정
	8.	조직 및 인력진단
	9.	사무이양 및 위임전결
	10.	주간, 월간,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
	11.	구의회 운영 지원
	12.	의회와 자치단체간의 협의에 관한 업무
	13.	의회 의결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재의요구
	14.	의회운영상황 동향 보고
	15.	의회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16.	행정자료실 운영
	17.	구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18.	구정업무 연구 연찬
	19.	구민아이디어 제안 접수 및 개발
	20.	구정시책 발굴 및 평가
	21.	구정 청사진개발 및 비전제시
	22.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총괄 및 확인평가
	23.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및 행정협정 체결
	24.	해외사절단 파견 등 계획 수립
	25.	외국 또는 외국기관과의 섭외
	26.	국제자매도시 협의회 운영
	27.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8.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
	29.	총괄 기금 관리

30.	세출예산 연간배정계획 수립
31.	분기별, 월별 예산배정 및 재배정
32.	재정계획 수립 및 심의위원회 운영
33.	재원조정교부금 관리
34.	지방채, 일시차입금, 조상충용충담금, 채무부담행위 조정
35.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에 관한 사항
36.	국고보조금 신청
37.	세입·세출 실행예산 편성
38.	예비비 지출 및 승인요구
39.	지방채 발행 및 승인요구
40.	명시이월사업 승인요구
41.	교육예산 지원 승인요구
42.	세출예산 이체
43.	세출예산 이용
44.	세출예산 전용
45.	세입세출예산 성립전 경비 사용
46.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47.	기금출연 및 특별회계 전출금 조정
48.	구 법제행정의 종합기획
49.	조례, 규칙, 예규, 훈령의 제·개정, 폐지 및 심사 공포
50.	고시, 공고, 예규, 훈령 등 중요문서의 심사
51.	법제자료의 조사 수집연구
52.	법령 및 자치법규 질의 해석
53.	행정법규 상담실 운영
54.	구 자치법규 및 예규문서 편찬 간행
55.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56.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57.	소송사건 처리 결과의 심사 및 조사연구
58.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59.	법률고문 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60.	공탁금 지출 및 회수
61.	통계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62.	통계기준의 설정 및 조정
63.	통계분석 및 통계작성의 통제
64.	통계의 분석 공표
65.	통계자료의 수집 및 통계간행물 발간
66.	도·소매인 및 서비스업 통계조사
67.	인구주택 총조사
68.	한국도시연감 자료수집
69.	인천사회지표 통계조사
70.	사업체기초 통계조사
71.	지역내총생산(GRDP)추계 자료조사
72.	광공업 통계조사
73.	산업총조사
74.	고용구조 통계조사
75.	기타 조사통계에 관한 사항
76.	통신종합계획 수립시행
77.	FAX 시설운영 유지관리
78.	행정 방송시설 운영 유지관리
79.	통신보안 관리
80.	각종 통신회선(행정통신, 전산회선 등)의 통합관리
81.	구분청 및 산하기관의 통신 개발계획 수립 시행
82.	통신기술 교육 훈련
83.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준공
84.	기타 행정통신에 관한 사항
85.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운영관리
86.	지방분권·균형발전 업무 추진
87.	지역특화사업 추진
88.	사업별 예산 편성 운영
89.	사업별예산제도를 도입한 지방재정정보시스템 운영
90.	시설관리공단 총괄관리 및 지휘감독
91.	관계기관 및 민간연계 협력체계 구축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감 사 실	1. 감사에 관한 종합계획 및 조정
	2. 감사 및 그 결과 조치
	3. 비위공무원 처리 및 소청에 관한 사항
	4. 신문, 방송 등 언론보도사항 조사처리
	5. 청원진정서 처리(다수인 민원 포함)
	6. 상급기관 이첩사항 조사처리
	7. 사무인수인계사항 확인
	8. 감사사항의 기록관리 및 통계분석
	9. 공직기강쇄신 추진에 관한 감찰
	10. 청렴도 관련 업무
	11.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12. 회계에 대한 실지 감사
	13. 일상감사에 관한 업무
	14. 계약심사에 관한 업무
	15.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16.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전담창구 운영
	17. 가로환경 순찰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소통협력 담당관	1. 구청장 직소민원(온라인 포함) 관리
	2. 현장 구청장실 운영
	3. 갈등조정 종합관리
	4. 민원조정 및 부서지정·분류
	5. 갈등전문가 위촉·운영
	6. 갈등대상사업관리 및 교육
	7. 소통1번가 총괄
	8. 민원분석 틀 운영
	9. 민원 빅데이터 수집·분석·모니터링·예보(온·오프라인)
	10.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및 조치
	11. 민원만족도 조사 및 평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보수 및 연금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건강보험 업무
	4. 방위협의회 운영
	5. 직장복지금고 및 구내식당 운영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7. 행정공제회 관리
	8. 청사경비 및 방호관리
	9. 직장민방위 및 자체예비군 운영 관리
	10. 의식행사 의전 및 접대에 관한 사항
	11. 민간에 대한 포상 및 표창
	12. 공무원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3. 회의실 운영 관리
	14. 구기등에 관한 사무
	15. 공무원 복무 및 휴가
	16. 직원월례조회 및 시무식·종무식
	17. 청내 사무실 조정
	18. 공무원 인사(구소속공무원 임용권)
	19. 인사제도의 기획 및 운영
	20. 근무성적 평정 및 경력 평정
	21. 공무원 신원조사 의뢰
	22. 공무원증 발급
	23. 소·동 행정지도 감독, 주민자치센터사업 운영지도
	24. 동의 명칭, 위치, 구역의 변경(행정구역 조정)
	25. 시책업무 추진
	26. 공무원 교육
	27. 공무직근로자 관리
	28. 반상회 운영
	29. 통·반조직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여론 및 동향관리
	31. 공무원 표창
	32. 공무원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33. 적십자회비 모금
	34. 단체관리(바르게살기운동)
	3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관한 사무
	36. 공무원 제안제도 및 행정제도 개선
	37. 주민등록 및 인감에 관한 사항
	38. 행정사 사무 업무
	39. 등록외국인 체류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발급
	40. 선거 및 국민투표
	41. 사무편람 제작 및 지도·점검
	42. 사회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조정
	43. 새마을 단체 및 지도자 관리
	44. 새마을 정신계도 홍보 및 교육
	45. 새마을 장학금 운영
	46.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47. 새마을 시설물 관리·지도
	48. 국토대청결운동 추진
	49. 국민운동 관련 시책 추진
	50. 민간단체보조에 따른 보조금 관리
	51. 해병전우회 관한 사항
	52. 공무원단체 지원업무
	53. 단체교섭 및 협약 체결
	54. 공무원직 노조 지원업무
	55.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56. 국내거소자 거소지 변경에 관한 사항 및 제증명 사항
	57.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에 관한 사무
	58. 공무원 호봉 및 근무년수 관리
	59.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60.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 지원

부 서 명	분 장 사 무
	61. 동청사 건립 종합계획 수립
	62. 동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63.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관리

구 분 청 사 무 분 장 표 (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홍 보 미 디 어 과	1. 공보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
	2. 국·시·구청시책의 홍보
	3. 구정홍보물 제작 및 관리
	4. 고시·공고·공보 발간에 관한 업무
	5. 구보(구청신문) 발간·배부
	6. 홍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7. 행정 정보화 종합계획 수립 시행
	8. 행정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운영(전산장비, PC, S/W)
	9. 구분청 및 산하기관 정보보안 종합계획 수립 및 교육
	10. 전산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
	11. 유·무선 네트워크 운영 관리
	12. 구분청 및 산하기관 도메인 유지 관리
	13. 정보화교육(직원 및 구민) 실시
	14. 전자결재시스템 운영 관리
	1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서버유지관리
	16. 공통기반시스템 운영관리
	17. 기타 정보·IT 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18.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관리
	19. 지역정보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20. 사랑의 PC 무상보급 및 무상수리
	21. 소셜미디어 및 블로그 기자단 운영 관리
	22. 개인정보보호 추진계획 수립 및 교육, 점검
	23. 정보기술아키텍처(EA) 도입 및 운영
	24.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 추진
	25.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및 조정
	26. 스마트워크 추진 및 원격근무 IT서비스 지원 (클라우드, GVPN 등)
	27. u-City 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재 무 과	1. 각종 회계관리
	2. 세입 세출외 현금관리
	3. 공사의 도급인부와 공급운반
	4. 현금,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5. 회계문서의 심사 및 업무지도
	6. 공사·제조·물품구입 수선의 입회
	7. 지출원인행위부 정리
	8. 회계관리 직인 보관 관리
	9. 회계증빙서류 보관
	10. 출입업자 지정 및 입찰업자 지명
	11. 시유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2. 구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유지관리
	13. 물품정수관리 및 수납계획 수립
	14. 관용차량의 정수조정 및 관리 지정
	15. 물품관리 지도 감독
	16. 기획재정부 소관 잡종재산의 유지관리
	17. 채물조사
	18.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련 국가소송업무 수행
	19. 은닉국유재산 색출 및 소유권 확인 업무
	20. 차량구입 및 운영관리
	21. 차량 운전원 지도감독 및 관리
	22. 경영수익사업의 종합계획·발굴추진 및 민자유치
	23. 사계절썰매장 지도 감독
	24.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설치운영
	25. 복식부기 회계업무 처리
	26. 행정선 관리
	27. 부가가치세 부과·징수 총괄
	28.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29. 공용건축물 시설공사 계획 및 예산수립

부서명	분장사무
	30. 공용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시행
	31. 공용건축물 신·증축 및 대수선 공사 시행 및 감독
	32.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
	33. 구청사 시설물 보수관리(조경분야 제외)
	34. 구청사 시설물 관리용 자재 기구의 출납 보관
	35. 구청사 전기설비의 시설 및 유지관리
	36. 청사 시설관리 용역업체 및 청소 지도감독
	37. 청사 소방 및 방화관리
	38. 그 밖의 타 실과에 속하지 않는 청사관리 사무
	39. 구 자금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무 1 과	1. 세무행정의 종합조정 및 통제
	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총괄
	3. 지방세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4. 지방세 운영평가 총괄
	5. 세정자료의 조사와 세정연감 작성
	6. 지방세의 수납, 집계 및 결산
	7. 지방세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8. 지방세 위원회 운영
	9. 과오납 조정 및 환불
	10. 채권관리 및 보고
	11. 구금고 계약과 구금고 및 수납기관의 지도감독
	12. 세무에 관한 제증명 발급 및 민원처리
	13. 수입증지 및 영수증서 관리
	14. 제증명 및 수수료 징수조례 요율조정
	15. 기부금품 모집 및 통제에 관한 사항
	16. 세외수입 수납, 집계 및 결산
	17. 세외수입 관련 전산화 추진 및 운영관리
	18. 세외수입 체납관리계획 수립 및 징수실적 보고
	19. 세외수입 체납자 채권압류
	20. 재산세 부과 및 독촉고지
	21. 제21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22. 제21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23. 건물 및 선박 등 시가표준액 조사
	24. 지방세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및 시행
	25. 지방세 체납처분 및 체납자 관리
	26. 지방세 교부청구 및 징수 촉탁서 처리
	27. 지방세 결손처분 및 가산금 조정
	28. 관허사업 제한
	29.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0.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1. 신용카드 수납처리 및 관리
	32. 부동산 공매
	33. 자동차세 체납관리
	34. 체납차량 공매
	35. 자동차 배출가스 과태료 징수, 체납처분
	36. 재산세 관련 조례 및 규칙 제·개정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세 무 2 과	1. 세무조사 계획수립 시행 총괄
	2. 자동차세, 취득·등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및 독촉고지
	3. 제2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4. 제2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5.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 부과 및 독촉고지
	6. 제5호 세목에 관한 과세자료 조사 및 통보, 수리 처리
	7. 제5호 세목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소송사무 수행
	8.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관련 조례 제·개정 및 폐지
	9.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위원회 운영
	10.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목표액 책정 및 징수전망 분석
	11.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지방세 운영평가
	12. 제2호 및 제5호 세목에 관한 세정자료 조사와 세표작성 및 통계
	13. 개별주택 가격 시가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14. 개별주택 가격 공시
	15. 공동주택 가격조사관련 업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민원 봉사과	1. 민원상담
	2. 공인신조 및 폐기
	3. 공인사전날인 및 인영인쇄사용 승인
	4. 공인관리실태 지도점검
	5. 기록관(문서고) 운영
	6. 기록관운영에 따른 자료관리(생성, 열람)
	7. 민원서류(인허가, 진정, 즉결) 접수 및 수수료 정산
	8.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9. 대외전자문서 배부
	10. 전화민원 및 우편민원 접수
	11. 인터넷민원(구정에 바란다) 접수 및 배부
	12. 관인날인
	13. 문서사송
	14. 우편물 접수 및 발송
	15. 기록물 전산화 관련 업무
	16. 민원행정 개선
	17. 공무원 친절교육 등 관련 업무
	18. 여권 접수, 교부 및 심사
	19.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계획수립 및 시행
	20. 민권관련 제도 운영
	21. 종합민원신고센터 운영
	22.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운영
	23. 정보공개제도 운영
	24. 어디서나민원관련 업무처리 및 수수료 정산
	25. 민원24 민원접수처리 및 수수료 정산
	26.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관리
	27. 무인민원발급기 관리 및 수수료 정산
	28. 통합민원발급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재외국민 포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나. 인감증명 발급
	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발급
	라. 호적(제적) 등·초본 발급
	마.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바.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
	사. 지적(임야)도 등본 발급
	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자. 경계점좌표등록부 발급
	차.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카. 건축물대장 발급
	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정산
	파. 전입세대 열람
	29. 호적(제적)원부 관리
	30.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및 수리
	31.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및 기록
	32. 기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3. 인구동태
	34. 채무불이행자 명부 관리
	35. 결격사유 조회 및 회보, 수형인명표 관리
	36. 기록물관리실태 지도점검
37. 기록물 평가 및 폐기	
38. 기록물 정리 및 이관	
39. 비밀문서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토지 정보과	1. 토지관리업무 종합계획 수립
	2. 과 공인관리
	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4. 개발부담금 과태료 부과징수
	5. 개발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6. 개발부담금 물납허가
	7. 개발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 개발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 개발부담금 거래가격신고
	10. 개발비용 처리 통보
	11.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12.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3. 부동산중개사무소 손해배상책임보증 설정(변경) 신고
	14.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고용·고용관계 종료 신고
	15. 부동산중개업 휴업·폐업 신고
	16. 중개사무소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7. 부동산투기단속에 관한 업무
	18. 공인중개사법·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19.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조사
	20.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자 형사고발 및 수사의뢰
	21.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22. 부동산실명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2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24. 과 예산, 회계 업무
	25. 지적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26. 지적공부 작성 및 재작성
	27. 지적측량 기초점(도근점) 보존 및 관리
	28. 국가기준점 보존 및 관리
	29. 지적도근점 표석대장 정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토지분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31. 토지이동처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2.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33. 토지이동지 일제조사
	34. 지적복구에 관한 업무
	35. 지적측량 성과검사
	36. 지적통계
	37. 지적측량장비 관리
	38. 축척변경
	39. 지적공부와 등기부와의 불부합사항 조사, 정리
	40.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정리
	41. 토지이동시 지적전산정리업무
	42.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관리 및 정리
	43.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신고
	44. 외국인 토지취득 계속보유 신고
	45. 토지기록전산시스템 관리
	46. 지적전산논리 오류정비
	47. 지적전산 오기 정정
	48. 미등기토지 주소등록 업무
	49. 국토정보센터 자료이용(조상땅 찾기)업무
	50. KLIS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1. KLIS 국가정보체계등록자료 관리
	52. 지적행정 사용자권한부여 및 관리사항
	53. 지적전산 정보관리
	54. 도시계획관련 제증명발급용 도면정리
	55.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56. 토지취득의 이용목적변경승인 업무
	57. 토지이용사후 실태조사
	58. 국토계획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59. 국토계획법 위반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60. 소유권정리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61. 국가소송수행
	62. 법인가년 사단, 재단 등록
	63.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발급
	64.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
	65.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업무
	66. 주택거래신고 업무
	67. 부동산 등기과태료 부과·징수
	68. 지가산정 종합계획 수립
	69.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관리
	70. 개별필지의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71. 개별지가 열람 및 통보
	72. 공시지가 전산시스템 운영관리
	73.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제공
	74. 지가조사반 편성운영
	75. 주민의견 접수 처리
	76. 의견제출지가 검증
	77.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78. 이의신청지가 검증
	79. 개별공시지가 현황도면 작성
	80. 국토교통부 지가 확인 요청
	81. 공시지가 결정
	82. 행정소송 수행
	83.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4.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85. 기반시설비용 과태료 부과·징수
	86. 기반시설부담금 납부독촉 및 체납처분
	87. 기반시설부담금 물납허가
	88. 기반시설부담금 분할납부허가, 납부연기허가
	89. 기반시설부담금 고지전 심사청구 결과 통지
	90. 기반시설특별회계 자금관리·교부
	91. 기반시설부담구역 분석 지정·고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92. 기반시설설치계획 작성
	93.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94. 기반시설설치 비용산정
	95.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96. 도로명 주소 고지·고시 업무
	97. 도로명 주소 홍보
	98.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99. 도로명판·건물번호판 등 유지보수
	100. 도로명법 시행 전 추진사업 정비
	101. 도로명 주소 전산시스템 운영 및 정비
	102. 전국 도로명 주소 통합센터 민원처리
	103. 도로명 주소 예산업무
	104. 과내 체납액 정리
	105. 국토정보센터 DB 구축·운영
	106. 건물통합정보 통합 DB 구축·운영
	107.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지원
	108. 공간정보 서버 운영
	109.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
	110.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업무
	111. 지적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위원회 운영
	112.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
	113.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및 조정관리
	114.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및 공부정리
	115.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운영관리
	116.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117. 도로굴착 온라인시스템 협의 업무
	118.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조회
	119. 정책정보 제공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120. 공유토지분할 위원회 운영·관리
	121. 공간정보(GIS) 운영
	122. 공간정보 분석 및 정책지도 제작

부 서 명	분 장 사 무
	123. 공간정보 행정주제도 제작 및 지원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 지 정 책 과	1. 구민복지시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3.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4. 지역사회복지사업의 기획·개발 및 시행
	5. 사회복지 시책홍보·교육
	6. 동 복지허브화 구축에 기반 조성
	7. 국가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
	8. 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9. 생활안정자금 관리
	10.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11. 부랑인·노숙인 보호 및 시설지원
	12. 무연고 사망자 처리 및 공고
	13. 행여자 관리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의 관리
	15.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6. 의사상자 신청
	17. 사회복지기금 관리·운영
	18.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19. 통합사례관리사업
	20.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1. 복지위원 관리 및 동 복지통장제
	22.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23. 동주민센터 복지사업지원 관리 및 평가
	24. 복지자원의 조사·개발·관리 및 배분
	25. 기부식품 제공사업 추진
	26.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27. 기초생활보장 생계, 해산, 장제급여 지급
	28. 정부양곡할인지원사업
	2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조사 및 관리(결정 포함)
	30. 저소득한부모가족 조사 및 관리
	31. 차상위대상자 조사 및 관리(결정 포함)
	32. 장애인복지대상자(자립자금포함) 조사 및 관리
	33. 기초연금대상자 조사 및 관리
	34. 타법의료급여대상자 조사 및 관리
	35. 초중고학비대상자 조사 및 관리
	36. 임대주택사업대상자 조사
	37. 자산형성지원사업 조사 및 관리
	38.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조사
	39. 이웃돕기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40.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41. 복지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노인복지과	1.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변경
	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변경
	3. 장사업무 추진
	4. 노인복지업무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6.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7. 경로당 운영지원 및 관리
	8. 노인건강진단
	9. 골드세대, 신중년 및 고령화정책 사업 추진
	10. 기초연금 지원 및 관리
	11. 독거노인지원 사업
	12. 노인회지회 지원 및 관리
	13.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4.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15.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장 애 인 복 지 과	1. 장애인 복지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 장애인 생활안정사업 일반
	3.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지도
	4.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5. 장애아동발달지원서비스 사업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7. 장애인 일자리 지원
	8.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신고
	9.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10. 기타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11. 급여의 실시(생업자금 및 수업료 지원 등)
	12. 장애인 연금 및 수당 지원
	13. 장애인등록 업무
	14. 장애인 단체에 관한 사항
	1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및 관리
	16. 중증장애인자립생활주택 지원 및 관리
	17. 자활지원계획 수립
	18. 자활기금계획 수립
	19. 자활기금 관리운영
	20.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 지원 및 관리
	21. 자활사업 민간위탁기관 지도 점검
	22. 조건부수급자 초기상담 및 배치
	23. 조건부수급자 확인조사 및 사례관리
	24. 차상위자활대상자 선정 및 관리
	25. 자활급여 지급 및 관리
	26. 가사간병방문서비스사업 관리
	27. 자활기관협의체 운영
	28. 생업자금 용자대상자 사후 관리
	29. 취약계층 자립지원 사업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자산형성사업 추진
	31. 의료급여 자격관리 및 급여지급
	32. 의료급여사 관리 및 지원
	33. 입양아동 및 노인, 장애인 의료급여 사업 지원
	34. 건강생활유지비 및 요양비 지급
	35.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관리
	36.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7. 정신요양시설지원 및 지도감독
	38. 조건부 수급자 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연계사업 추진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 육 학 신 과	1. 교육지원 정책개발, 기획
	2.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3. 교육경비 보조 심의위원회 운영
	4.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5. 기타 학교지원에 관한 사항
	6. 외국어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7. 외국어 특성화 사업 추진
	8. 평생학습 종합계획 수립·운영
	9. 평생학습 협의회 구성·운영
	10.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11.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12. 평생학습 조성에 관한 사항
	13. 관내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14. 도서관 관리·운영 지원
	15. 교육국제화특구 운영에 관한 사항
	16. 학교 무상급식지원
	17.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18.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19.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운영
	20.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21. 청소년위원회 운영
	22.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23. 어려운 청소년 보호육성
	24. 청소년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
	25. 청소년 특별지원
	26. 청소년 선도 및 계도
	27. 청소년단체의 지도 육성
	28. 청소년 지도 및 생활상담 지도
	29.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추진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청소년보호위반 업소 지도 및 단속
	31.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단속
	32. 과징금·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3.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관리
	34.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35.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관리
	36. 장학재단 운영 및 관리
	37. 교육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가정 보육과	1. 여성복지연간계획 수립
	2. 직장내 성희롱 고충상담 및 조사
	3.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4. 직장 폭력예방교육 계획 수립 및 추진
	5. 성별영향분석평가(법령,계획,사업) 추진
	6. 위원회 여성참여 관리
	7. 서구여성단체협의회 지원 및 관리
	8.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지원
	9. 여성가족분야 충무계획 수립
	10. 서구양성평등기금 관리 및 공모사업 추진
	11. 양성평등위원회 구성 및 운영
	12.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관리
	13.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 홍보사업 추진
	14. 건강가정, 양성평등 가족문화 조성사업
	1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16.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 추진
	1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18.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19. 육아코디네이터 사업 운영
	20.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21. 한부모가족 지원 및 보장결정
	22.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 운영
	23. 행복출산 지원사업 추진
	24.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5. 결혼중개업소 등록 및 관리
	26. 보육정책위원회 구성·운영
	27.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28. 구립어린이집 확충
	29.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
	30. 어린이집연합회 관리
	31. 영아·누리과정 보육료 보장결정 및 지급
	32.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장결정 및 지급
	33.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리
	34. 지역사회 보육네트워크 구축
	35. 어린이집 운영지원
	36. 보육교직원 임면 및 자격관리
	37.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사업 추진
	38. 어린이집 수급계획 수립 및 신규·변경인가
	39. 어린이집 청정무상급식 사업 추진
	40. 어린이집 급식자재 공동구매 업체관리
	41. 특수·취약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
	42. 공공형·인천형·열린어린이집 선정·지원
	43.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지원 및 지도감독)
	44. 어린이집 차입금 관리 및 용자보육시설 관리
	45. 어린이집 평가인증 관리
	46.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교육지원
	47. 어린이집 기능보강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
	48. 부모모니터링 및 보육멘토 운영
	49. 보육솔루션위원회 운영
	50. 어린이집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부 서 명	분 장 사 무
	51. 어린이집 지도감독
	52. 어린이집 회계교육 운영
	53. 어린이집 안전(비상재해대비)시설 및 놀이시설 관리
	54. 인구정책관련 계획수립 및 지역맞춤형 시책발굴
	55. 저출산 대응계획 수립, 출산장려시책 발굴
	56. 출산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아 동	1.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행 복 과	2. 공동생활가정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가정위탁아동 책정 및 지원
	4. 소년소녀가정 등 요보호아동 지원
	5.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6.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 및 운영
	9. 입양아동 등록 및 지원
	1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
	11. 요보호아동 시설 입소 의뢰
	12. 아동수당 업무추진
	13.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14. 아동지킴이 운영
	15. 위기아동발굴
	16.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지원
	36. 드림스타트사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37.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38. 드림스타트 대상자 관리
	39. 드림스타트 복지 세부 프로그램 운영
	40.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추진

부서명	분	장	사	무
문화관광 체육과	1.	음반·비디오·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 및 지도감독		
	2.	문화재 보존관리 및 기타 관광에 관한 사항		
	3.	지정문화재 자료보존 및 관리		
	4.	비지정문화재(향토유적 등)의 보존관리		
	5.	지방민속자료 발굴 조사		
	6.	향토문화의 발굴 육성		
	7.	문화예술용품의 생산 권장		
	8.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설치 운영		
	9.	검단복지회관·청라복합문화센터·국민체육센터· 실내게이트볼장 지도감독		
	10.	관할 구역내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중 국가가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11.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2.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13.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에 관한 등록 및 지도감독		
	14.	관광편의시설업에 관한 지정 및 지도감독		
	15.	공연장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6.	출판사 및 인쇄등록에 관한 사항		
	17.	종교행정에 관한 사항		
	18.	시·구민생활체육대회 추진		
	19.	체육의 날 행사 추진		
	20.	체육시설업의 신고처리 및 지도감독		
	2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		
	22.	체육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23.	체육진흥계획 수립		
	24.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25.	녹청자박물관 관리 및 운영		
	26.	마실거리 야외무대 관리		
	27.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		
	28.	서구사 발간		
	29.	국어책임관 업무추진		
	30.	지명위원회 운영		

부 서 명 1438	분 장 사 무 2019. 05. 13.()	
	31.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32.	서구문화예술인회 지원
	33.	미술품 구입 및 관리
	34.	관광안내체계 구축
	35.	관광 시설물 설치 및 점검
	36.	관광활성화사업 추진 및 협의
	37.	유원시설업에 관한 허가·신고 및 지도감독
	38.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및 추진
	39.	서구 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
	40.	장애인 생활체육지원 및 엘리트 선수 운영관리
	41.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추진
	42.	생활체육교실 운영
	43.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44.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처리 및 지도감독
	45.	스포츠 이용권 사업 추진
	46.	체육시설 내 푸드트럭 영업자 공모·선정 및 관리
	47.	롤러교실 운영
	48.	구민화합 체육대회 추진
	49.	체육단체 관리 및 운영
	50.	기관화합 체육대회 추진
	51.	여름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52.	문화재단 운영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클 린 도 시 과	1. 환경관리 민원처리
	2. 생활소음 관리
	3.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4.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5.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징수
	6.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7.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수리
	8.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9.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10. 악취 배출업소 지도점검
	11. 비산먼지 억제 중장기 대책 및 시행
	12. 특정공사 사전신고 수리 및 지도점검
	13.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14.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15. 자동차공회전 단속
	16. 냉·온수기, 정수기 설치신고
	17. 이륜자동차검사 및 연장(유예)
	18.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발급
	19.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점검
	20. 냉·온수기,정수기 설치관리자 지도·점검
	21. 악취배출업체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22. 악취관리지역 관리
	23. 악취관리지역외 악취발생시설 관리
	24. 생활악취 관리
	25. 석면안전관리
	26. 석면피해구제
	27. 환경오염종합상황실 운영

28. 자동차/이륜자동차 정비사업장지정 업무
29.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30. 인공조명 빛공해 관련 업무
31. 악취관련 정책, 시책, 현안업무
32. 환경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환경 관리과	1.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수리
	2. 무허가배출업소 지도단속
	3. 토양오염 유발시설 신고
	4.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및 주민의견 수렴
	5. 각종 중규모사업의 환경성 검토
	6. 환경보전 종합계획의 수립
	7. 환경기술인 교육
	8. 환경보전 대구민 홍보
	9.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운영
	10.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체납관리
	11. 환경관리 민원처리
	12. 환경오염 배출업소 현황 조사
	13. 토양오염 실태조사
	14.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추진계획 수립
	15. 대기·수질·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고발,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16. 토양오염 유발시설 지도점검
	17. 하천오염행위 단속
	18. 환경 사회복무요원관리
	19. 환경관련 오염도검사자료 관리
	20. 환경관련 진정민원 처리
	21. 대기·수질 기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22. 환경재난방지계획 수립 시행
	23. 수질·대기·환경오염자동측정망(TMS)운영
	24. 배출·방지시설 개선계획서 수리
	25. 환경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
	26.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조치(연안해양 포함)
	27. 하천 오염도 검사
	28.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
	29. 중수도, 빗물이용시설에 관한 사항

30. 저수조청소업 신고에 관한 사항
31. 환경관련 정책, 시책, 현안사항 업무
32. 환경사범 수사 업무
33. 환경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34. 절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35.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 수리
36. 악취저감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
37. 생물다양성관리사업
38. 유해조수포획허가 및 수렵면허
39. 야생동물 구호
40.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41. 기후변화종합계획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
42.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43. 탄소포인트제 가입 추진(전기, 수도)
44. 녹색구매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업무
45. 기후환경네트워크 관련 업무 추진
46.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47.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48.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사업장 관리
49. 먹는샘물공동시설(약수터)관리 및 수질검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생태 하천과	1. 생태하천 복원사업
	2. 하천부지 점용허가
	3. 하천 수익자부담금 징수
	4.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5. 하천사용료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6. 공유수면에 관한 사항(지정 항만구역외의 공유수면)
	7. 하수도 및 지하수사업 특별회계 운영(계약 및 지출에 관한 업무)
	8. 행정재산(구거)의 용도 폐지
	9. 도시계획사업(구거, 하천)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0.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3.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4.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5. 건설공사(하천하수분야)의 시행 및 지도
	16.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17. 하수도 사용료 집계
	18. 지하수 사용량 검침
	19.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관리
	20. 하수도 사용계량기 설치 및 교체
	21. 하수도 종별 책정 및 변경
	22. 지하수 수질검사
	23.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무
	24. 공공하수도의 설치 개축 및 수선공사에 관한 사무
	25. 하천유지관리
	26.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7. 소하천 정비사업 대상지구선정

28. 소하천 정비사업 기술지도반 편성 운영
29. 하천감시
30. 공공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31. 공공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32. 공공하수도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33. 지하수 관리에 관한 사무
34.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
35. 지하수 이용부담금 체납액 관리
36. 배수펌프장 관리
37. 비점오염저감시설물 관리
38.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기본계획 수립
39.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 관련 조례, 규칙 제·개정
40.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관리
41.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협의 및 준공검사
42.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지도감독
43. 개방화장실 지도 점검
44. 재래식 화장실 개량 추진
45.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및 관리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안 전 총 괄 과	1.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2. 재난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한 검토·협의
	3. 재난관련 위원회 및 각종 규정 제·개정
	4. 민간자율 방재기능 강화 및 민간협력 지원
	5. 재난예방시설 설치 및 위험지역 지정 현장점검
	6. 안전관리체계 및 자원동원체계 구축
	7.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8. 이재민 관련 업무
	9.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조사·분석
	10. 국가기반시설 재난상황보고
	11. 사회복지무요원 관리
	12. 민방위업무의 종합계획 수립
	13. 전시병무업무
	14. 충무계획의 지침작성과 조정통제
	15. 주민신고망 조직운영
	16. 재해 및 일반구호
	17. 재해구호물자의 출납보관 관리
	18.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19. 재난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20. 재난관리기금 운용
	21.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
	22.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23.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관리
	24. 민방위 준비명령
	25. 민방위대 검열
	26. 민방위 시설물 관리
	27. 민방위 편성 및 교육 관리
	28.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지원사업
	29. 안전문화운동 전개
	30.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1.	인적·사회적 재난 대응 총괄
	32.	안전·재난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및 총괄 지휘
	33.	안전한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34.	통합관제센터 및 CCTV 구축·운영 종합계획 수립
	35.	확장서비스(u-Service) 및 지능형서비스 개발·도입
	36.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시설물 유지보수
	37.	개인영상정보보호에 관한 사무
	38.	방법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39.	CCTV민원(새울, 반상회, 전화, 방문, 진정, 집단민원 등) 처리
	40.	관제인력 채용 및 관리
	41.	CCTV관련 부서·유관기관(시청 관련부서, 경찰, 학교) 업무협의
	42.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3.	여성안심구역 CCTV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44.	지하안전에 관한 사무
	45.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사업
	46.	재난안전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자 원 순 환 과	1. 생활폐기물처리 기본계획수립
	2. 생활폐기물처리 관련 조례·규칙 제·개정
	3.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지도감독
	4. 환경미화원 관리
	5. 도로청소 및 청소차량 관리
	6. 청소장비 개선 및 관리
	7. 쓰레기종량제 추진
	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계약
	9. 생활쓰레기 수집·수수료 관리
	10. 재활용품의 회수처리 및 실적관리
	11. 재활용선별보관장 및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
	12. 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사업계봉투 관련업무
	13. 재활용 촉진 및 관련업무
	14. 의류 수거함 관리에 관한 사항
	15. 쓰레기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
	16.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관련업무
	17. 수도권매립지 및 청라소각장 관련업무
	18.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변경)
	19.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변경)
	20.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변경) 및 처리실적보고
	21.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관련 업무
	22.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신고(변경)
	2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24. 지정(감염성)폐기물 처리증명 확인(변경포함)
	25. 폐기물 연간 지도·단속 종합계획 수립
	26. 방치폐기물, 순환골재 관련업무
	27.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행정처분
	28.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업체 지도·점검
	29. 사업장 일반 및 건설폐기물관련 각종 민원처리

30.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변경) 관련 업무
31.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2.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33.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신고(변경)
34. 폐기물 전자인계서 관리 및 행정처분
35. 폐기물 처리신고(변경)
36.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점검
37. 고품연료 제품 제조신고(변경)
38.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계획 수립
39.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책 사업 추진
40.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처리 대행 계약
41. 화분형 거치대 관련 업무
42. 음식물류폐기물 세외수입 징수
43.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바코드 제작 업무
44.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 관리
45. 음식물류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관리
46. 음식물류폐기물 물류시스템 유지·관리
47. 음식물류폐기물 대행료 지급
48. 소규모 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49.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 업무
50.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이행계획 신고처리
51.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52. 다량배출사업장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관리
53.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주택 관리 운영 업무
54. 음식물류폐기물 RFID 시스템 유지 및 관리
55. 친환경 미생물 보급 및 관리 업무
56. 청라자원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무
57. 음식물쓰레기 광역처리시설(청라·송도) 관련 업무
58.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원가계산 연구 용역 업무
59.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세대수 관리
6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위 생 과	1. 공중접객업소의 위생개선을 위한 종합지도계획수립 시행
	2.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
	3. 이·미용사 면허증 발급
	4.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취소 및 업무정지
	5.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6. 공중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 신고 수리
	7. 공중이용시설의 신고수리 및 지도감독
	8. 위생관련 영업신고(변경)수리 및 지도감독
	9. 위생용품 제조업 및 처리업 신고(변경)수리 지도감독
	10. 위생관리담당자 지정(해제)신고 및 지도관리
	11. 식품위생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행
	12.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허가(변경) 및 신고(변경)수리
	13. 식품판매업 신고(변경) 수리
	14. 식품위생접객업소 및 소분판매업에 대한 정기 위생검사
	15. 국민 영양조사 및 음식문화 개선운동 추진
	16. 모범음식점 등 지정관리
	17. 식품제조업소 허가(변경) 및 지도관리
	18. 식품위생접객업소의 휴업·폐업신고 수리
	19. 식품용기포장지 제조업 신고 수리 및 지도관리
	20. 조리사 면허증 발급
	21. 집단급식소 신고수리 및 관리
	22. 자동판매기 등 지도감독
	23. 식품위생관련 단체 지도감독
	24.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위생감시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25. 퇴폐·변태·사행위등 위반업소 지도단속
	26. 영업시간 준수여부 지도단속
	27. 위생접객업소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28. 감시 및 단속과 관련된 신고진정 등 민원처리
	29. 부정불량식품과 유통식품 단속 및 수거검사 실시
	30. 무허가업소의 단속 및 조치
	31. 학교주변 유해업소 지도단속 및 처리
	32. 간이상수도에 관한 사항
	33. 소규모 급수시설에 관한 사항
	34. 위생상의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경 제 에 너 지 파	1. 지역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2. 지역산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유지 및 보급
	3. 지역특산품 전시회 개최 및 구매자 유치·지원
	4. 지방 물가지도 단속 및 동향관리
	5. 물가대책위원회 관리 및 개최
	6. 소비자 고발 센터등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의 운영관리
	7. 지역 특화산업 육성개발계획 수립 시행
	8. 지역단위 경제발전계획 수립 시행
	9. 대규모점포 개설(변경) 등록
	10. 대규모점포 관리자 지정
	11. 가격 표시제 지도단속
	12. 가격 표시제 실시업소 지정관리
	13. 우수토산품등의 개발보급
	14. 토산품등 생산기술 전승자의 발굴보호
	15. 소비자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
	16.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수립 및 추진
	17. 농어업 및 식품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18.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업무
	19.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업무
	20.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업무
	2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22. 종자 및 비료에 관한 업무
	23. 양곡관리에 관한 업무
	24. 농수산물 유통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업무
	25.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업무
	26. 농수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27.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업무
	28. 농업기반시설 관리 및 농림부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업무
	29. FTA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업무
	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1.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업무
	32.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3.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34. 식물방역에 관한 업무
	35. 식생활교육지원에 관한 업무
	36. 수산업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7. 낚시관리 및 육성에 관한 업무
	38. 내수면 어업에 관한 업무
	39.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업무
	40. 복권업소 지도·단속
	41.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사무
	42. 대부업에 관한 사무
	43. 통신·방문·전화권유 판매업에 관한 사무
	44. 담배판매소매업에 관한 사무
	45.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46. 재래시장인정 등록 및 관리
	47. 어선관리에 관한 업무
	48. 수산자원관리에 관한 업무
	49. 어촌어항에 관한 업무
	50. 소금산업진흥에 관한 업무
	51. 축산업에 관한 업무
	52. 가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53. 가스 안전점검 사후관리
	54. 고압가스(제조, 판매, 저장소 설치, 용기·냉동기·특정 설비제조허가)에 관한 사무
	55. 고압가스업(운반자, 수입업자 등록)에 관한 사무
	56. 액화석유가스업(충전, 판매, 가스용품제조, 저장 허가)에 관한 사무
	57.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에 관한 사무
	58. 특정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사용 신고 및 가스사용시설 관리에 관한 사무
	59. 도시가스시설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60. 도시가스업(충전, 공급시설)에 관한 사무
	61.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62. 가스안전관리 계도·홍보
	63. 석유판매업(주유소, 용제판매소, 일반판매소, 이동판매소)에 관한 사무
	64. 에너지 수급위기 극복에 관한 사무
	65.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관련사무
	66.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
	67. 기타 가스안전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명령
	68. 송·변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사무
	69.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무
	70. 가축 전염병 예방에 관한 업무
	71. 동물보호에 관한 업무
	72. 수의사에 관한 업무
	73. 동물 약국 및 동물용 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74. 사료관리에 관한 업무
	7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업무
	76. 말산업육성에 관한 업무
	77. 축산물위생관리에 관한 업무
	78. 축산자조금의 조성에 관한 업무
	79.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80. 초지관리에 관한 업무
	81. 전력효율향상사업에 관한 업무
	82. 석탄가공업에 관한 사무
	83. 난방연료 지원사업(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업무
	84.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85. 지역화폐에 관한 사무
	86. 경제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기 업 지 원 과	1. 노동행정의 계획 수립 시행
	2. 노동단체의 지도 육성
	3. 근로자 복지시설 관리
	4. 지역 내 노사관계 동향파악 및 지원
	5. 지방공업육성을 위한 종합기획 조정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가. 공장 신·증설 및 이전승인
	나.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아파트형공장 설립승인
	다.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에 관한 사무
	라. 입지기준 확인에 관한 사무
	마. 공장 휴·폐업 신고 및 공장등록증명 발급
	바. 불법 공장 단속에 관한 사항
	7. 중소기업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
	8.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업체의 선정추진
	9. 중소기업 창업 민원실의 설치운영
	10. 지식재산기반창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1. 중소기업창업 관련 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무
	12. 민속공예산업 육성계획수립 시행
	13. 공예품등 전문생산업체 지원
	14. 품질경영 촉진에 관한 사무
15. 불법·불량 공산품 지도단속	
16. 해외 판로개척 계획 수립	
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관한 사무	
나. 해외박람회 참가에 관한 사무	
다. 해외 지사화 사업에 관한 사무	
17. 계량기에 관한 사무	
18. 계량증명업등록에 관한 사무	
19. 산업자원동원에 관한 사무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0.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광공업에 관한 사무
	22. 공업지역 진흥 관련 사무
	23. 구조고도화 사무
	24. 생태산업단지 조성 사무
	25. 혁신산업단지 사무
	26.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적경제 일자리과	1.	직업소개소 관련 업무
	2.	무허가 직업소개행위 단속
	3.	기업&일자리지원센터 운영
	4.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5.	고용복지+센터 운영
	6.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7.	공공근로사업 추진
	8.	기타 일자리관련 민원처리 상담
	9.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지원사업 추진
	10.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생산품 또는 서비스 우선구매 장려
	11.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12.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13.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추진
	14.	생활임금액 결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5.	마을공동체사업 발굴 및 추진
	16.	노사민정 협의회 운영
	17.	일자리창출 및 지원시책 발굴 추진
	18.	일자리사업관련 전산망 운영 관리
	19.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
	20.	50플러스일자리에 관한 사무
	21.	청년정책에 관한 사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교 통 정 책 과	1. 교통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2.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3. 교통안전 시책추진
	4.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5. 교통공안협의를
	6. 교통체계관리(T.S.M)지역사업 추진
	7.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8. 교통영향평가 심의진달
	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10. 승용차 선택 요일제 업무
	11. 스쿨존 시설 및 운영
	1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지정 및 표지판 설치
	13.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택시, 버스, 화물)
	14. 자동차정류장 설치에 관한 사항
	15. 충무계획(교통실시) 수립 및 시행
	16. 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사항
	17. 창고업(화물유통촉진법)에 관한 사무
	18.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에 관한 사항
	19. 대중교통(택시, 시내버스, 마을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송질서 지도단속
	20.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
	21. 교통불편신고 접수처리
	22.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 부과징수
	23. 사업용화물자동차 번호판 의무교체 확인 관리
	24.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주선사업자 포함) 주기적 신고 처리
	25. 사업용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급
	26. 화물자동차 유류 복지카드 승인 처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7. 사업용 운수사업자(버스, 택시, 화물) 전국 전산망 등재
	28.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및 화물터미널 설치계획 추진
	29. 차고시설 신고업무
	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송치에 관한 사항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 차 관 리 과	1.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운영
	2.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개정·폐지
	3.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4.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5. 불법 주·정차 관련시설물(CCTV, 불법주정차금지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
	6.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주차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7. 공영주차장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민영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9. 주차장관리 및 설치조례 제정, 개정, 폐지
	10. 시설관리공단(공영주차장) 지도감독
	11. 기계식 주차장 지도감독
	12.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협의 및 지도감독
	13. 거주지 우선 주차제 운영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차 량 민 원 과	1. 자동차관리사업 종합계획 수립
	2.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업무
	3. 자동차점검 및 정비명령 등 자동차에 관한 사항
	4. 무허가,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 행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무
	5. 자동차의 개선명령
	6. 자동차정비관리자 선·해임 신고업무
	7. 차고시설 신고업무
	8. 사업장 이전시설 변경등록업무
	9.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정지
	10. 자동차관리사업의 행정처분
	11. 자동차관리사업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재결
	12.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증명서의 제시요구등 책임보험에 관한 업무
	13. 자동차 책임보험등의 가입명령 및 가입사실 증명서류의 제출명령
	14.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사항 조회
	15.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16. 이륜차 구조, 장치의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18. 책임보험미가입 차량 번호판 영치
	19. 법령위반차량 과태료 처분
	20. 무적, 무등록차량 및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한 사항
	21. 자동차, 신규, 부활 등록
	22. 자동차 이전, 단순 변경등록
	23. 자동차 구조, 장치변경승인
	24.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25. 계속검사 경과차량 검사명령
	26. 법규위반차량 고발조치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7. 자동차관련(등록, 검사) 과태료 부과, 징수, 체납처분
	28. 자동차 제증명(등록원부, 말소) 발급
	29. 자동차 번호판 교부 및 회수
	30. 자동차 등록 및 과태료 이의신청 처리
	31. 자동차 전산자료 관리
	32. 자가용 사용신고 처리
	33. 자동차 저당, 압류 등록 및 해제
	34. 자동차 봉인의 관리
	35. 자동차 검사, 점검 연기신청 처리
	36. 자동차관련 승인대장 관리
	37. 자동차 말소등록
	38. 자동차 등록증(봉인) 재교부
	39. 검사명령 불이행 차량 번호판 영치
	40. 건설기계 관련 업무
	41. 저속전기자동차 등록
	42. 저속전기자동차 운행(변경)허가·단속 및 과태료 부과
	43.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4. 무단 방치차량 강제처리 및 송치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도시 기반과	1. 자치구 건설종합계획의 수립
	2. 건설공사용 자재 및 기구 출납보관
	3. 도로수익자 부담금의 기본자료조사
	4. 도로부지 점용허가
	5. 도로 수익자부담금 징수
	6. 건설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조정자료 작성
	7. 국공유재산(도로)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도로점용 및 도로공작물제거 설치허가
	나.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8. 시설동원(일반토지, 건설업체, 중장비업체)등에 관한사항
	9. 전문건설업에 관한 사항
	10. 지하도점 상가유지관리
	11. 도로, 기본자료조사 및 부과징수
	12. 구도의 점용허가 및 도로굴착복구비, 점용료징수 (단, 2개구 이상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점용면적이 많은 구에서 타구와 협의 처리)
	13. 행정재산(도로)의 용도 폐지
	14. 도시계획사업(공원, 구거, 하천제외)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15.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6.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7.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8.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9.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0.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21. 도로관리계획 수립 시행 (도로폭 20미터 이하)	
22. 도로정비 및 수로원 배치관리	

23. 건설공사(토목분야)의 시행 및 지도 (도로폭 20미터 이하)
24. 도로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25. 자치구가 시행하는 토목사업의 조사, 측량, 설계와 시공감독(도로폭 20미터 이하)
26.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노면 및 전체도로 시설물 유지관리
27. 도로폭 20미터 이하 도로의 노선인정과 폐기 및 변경
28. 도로폭 20미터 이하 사리도의 시설 및 유지관리
29. 사도 개설허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 축 과	1.	건축행정의 종합조정
	2.	건축행정 건실화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신발생 위법건축물(무허가) 정비등에 대한 사무
	4.	향측적출 위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등에 관한 사무
	5.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리
	6.	건축시공 및 지도감독
	7.	건축물의 유지관리
	8.	건축사 지도감독
	9.	지방건축위원회 운영
	10.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11.	가설건축물 허가 및 관리
	12.	건축통계 및 자료관리 보관
	13.	공동주택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관리
	14.	건축공사장 관리감독
	15.	건축신고의 수리
	16.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17.	공작물 축조 신고의 수리
	18.	신고사항의 변경수리
	19.	신고예상 건축물(또는 공작물)의 건축
		가. 착공신고의 수리
	20.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21.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전환, 합병, 말소, 정정)
	22.	등기필통지서에 의한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
	23.	건축물사용승인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
	24.	공용건축물 건축허가 및 협의
	25.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시설공사 예산 집행
	26.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신·증축 및 대수선 설계용역
	27.	공용건축물(구청사 및 동청사제외) 공사감독
28.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총괄건축가)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 택 과	1.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가. 사업승인
	나. 착공신고
	다. 사용검사
	라. 경미한 변경처리 및 사업계획 변경
	마.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바. 공사장 안전점검
	사. 임시사용 승인
	아. 감정평가 등록 및 의뢰
	자.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차.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카. 공동주택 감리자 지정
	3. 공동주택관리
	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변경)신고
	나. 공동주택 하자보수
	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라.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마. 노후·불량주택(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바. 시특별대상건축물 안전점검
	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아.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자. 주택관리업등록(변경)
	카. 공동주택 감사·지도·감독
	4. 공동주택 관련 특수시책 업무
	5. 조합주택설립에 관한 사항
	가. 설립인가
	나. 조합신고
	6. 임대주택
가. 사업자 등록(변경)	
나. 임대조건 신고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다. 임대주택분양전환허가
	7. 재건축에 관한 사항
	가.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나. 사업시행인가
	다. 착공신고
	라.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마. 공사장 안전점검
	바. 사용검사
	사. 임시사용승인
	아. 감리등록 및 변경관계
	자. 위반건축물 고발 및 조치
	8.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9. 주거복지 관련
	10.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급
	11. 저소득가구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12. 저소득가구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대상자 추천
	1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제외)

구 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 시 개 발 과	1. 도시개발사업 예산 및 특별회계관리
	2. 도시개발사업 보상업무
	3. 도시개발사업 청산금 징·교부
	4. 도시개발사업 토지등기
	5. 도시개발사업 체비지관리 및 매각
	6.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7.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계획수립 요청·실시계획인가 신청
	8.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조성공사 시행
	9. 환지예정지 지정·인가 및 처분
	10. 환지예정지 관리 및 사용허가
	11.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12.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13.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14. 미협외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15.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16. 도서·낙도 개발사업 추진
	17.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18. 도시계획에 관한 사무
	19.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무
	20.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사무
	21. 개발행위허가(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적치)에 관한 사무
	22.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무
	23. 항만 관련 사무

구 분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도시 재생 경 관 과	1.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추진계획 수립
	2.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공인가에 관한 사무
	6. 도시경관사업 계획수립
	7. 도로 및 가로시설물 경관사업
	8. 수시 경관사업 추진
	9. 경관시설물 점검 및 유지관리
	10.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11.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고수리
	12. 광고물 안전도 검사 실시 및 위탁
	13. 광고물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14. 불법유동광고물 과태료의 부과
	15. 옥외광고물업의 지도·관리
	16.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운영
	17. 광고물의 사후관리
	18. 불법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부과
	19.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20. 현수막지정계시대·시민계시관 위탁관리
	21. 도시재생분야 컨트롤타워 기능
	22.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구 본청 사무분장표(제7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공 원 녹 지 과	1. 조립 및 육림
	2. 산림보호
	3. 도시녹화
	4. 임산물가공 이용
	5. 종묘 판매업 등록
	6. 산지정화
	7. 산불예방 및 진화
	8. 산림내 건조물 관리
	9. 산림 병충해 방지
	10. 산사태 예방·복구
	11.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
	12. 공유(시·구유)재산중 임야의 관리
	13. 사방
	14. 가로수 식재 및 관리
	15. 산지이용
	16. 임업통계
	17. 보안문서 생산관리 (충무계획)
	18. 공동주택 조경협회
	19. 산림 사회복지무요원 지도관리
	20. 약수터의 주변(시설물등) 정비
	21. 공원·녹지 종합계획 수립
	22. 도시공원 조성
	23.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4. 녹지조성
	25. 조경시설 유지관리(구청사 조경분야 포함)
	26.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27.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28. 도시계획사업(공원·녹지)에 따른 토지, 지장물 매수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9. 보상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30. 미불용지 보상업무에 관한 사항
	31.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관한 사항
	32. 잔여지 보상에 관한 사항
	33. 미협의 토지 및 지장물의 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34. 수용재결에 따른 입회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
	35. 시설녹지 조성에 관한 사항
	36.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7.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8. 목재생산업 등록 및 관리
	39. 산림경영계획(변경)인가
	40. 임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41. 가로수·수벽 점용
	42. 시민 기념식수
	43. 시설녹지 유지관리
	44. 도시자연공원 구역 행위허가

[별표 3]

출장소 사무분장표(제11조 관련)

부서명	분장사무
검단	1. 출장소내 행정의 종합조정
	출장소
	2. 서무, 보안, 복무,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3. 문서관리
	4. 회계관리 및 물품출납 보관
	5. 공보, 홍보, 문화재 보호관리, 출판, 향교, 사찰, 기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6. 기부금품 통제
	7.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공채·지방채에 관한 사항
	9. 국·공유재산관리
	10. 상수도, 자연보호, 수질보전에 관한 사무
	11. 농지개량에 관한 사무
	12. 환경, 위생, 산업, 상공에 관한 사항
	13. 지역개발에 관한 사무
	14. 건설에 관한 사무
	15. 건축에 관한 사무
	16. 자연재해 방재대책
	17. 보안등에 관한 사무
	18. 재산세 과세·징수
	19.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징수
	20.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21. 지방세 체납관련 민원 처리 및 체납액 징수
	22. 관허사업 제한 및 철회
	23. 도시녹화
	24. 산불예방 및 진화
	25. 등산로 유지보수
	26. 가로수 식재 및 관리

부 서 명	분 장 사 무
	27. 공동주택 조경협회
	28. 도시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29. 녹지조성
	30. 조경시설 유지관리(출장소 조경분야 포함)
	31. 도시공원 녹지점용 허가
	32.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료 징수·부과
	33.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34.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법적이행사항 (보험가입, 안전점검, 안전교육, 정기시설검사)
	35. 가로수·수벽 점용
	36. 시민 기념식수
	37. 시설녹지 유지관리
	3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

의 건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6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반영하고, 검단출장소의 세무 및 공원 녹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별표 3)
 -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부과·징수,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사무 위임
 - 산불진화, 숲길(등산로) 유지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협의, 도시공원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4)
 - 자립지원과를 장애인복지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서를 반영하고, 검단출장소의 세무 및 공원 녹지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서구청장 관장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에게 위임 처리하여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조정(별표 3)
 -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부과·징수, 등록면허세(면허) 부과·징수, 지방세납세증명서,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사무 위임
 - 산불진화, 숲길(등산로) 유지 관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협의, 도시공원
-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별표 4)
 - 자립지원과를 장애인복지과로 개정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문화관광 체육과	1	음악산업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 변경 다. 신고 및 등록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 취소·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같은 법 제24조 - 같은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6조	
	2	비디오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 나. 신고·등록 사항의 변경 다. 신고·등록증의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라. 행정조치(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58조, 제60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 같은 법 제64조 - 같은 법 제67조, 제68조, 제70조, 제99조	
	3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신고·등록·허가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의 신고·등록·허가 나. 신고·등록·허가 사항의 변경 다. 신고 및 등록·허가증 재교부 라. 폐업 및 직권말소 마. 행정조치(경고, 영업정지, 등록·허가취소, 영업장폐쇄, 과징금, 과태료, 폐쇄 및 수거)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6조 - 같은 법 제25조, 제26조, 제29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30조 - 같은 법 제35조, 제36조, 제38조, 제48조	
	4	공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연장의 등록 나. 공연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폐쇄 조치, 영업정지, 과태료)	- 공연법 제9조 - 같은 법 제33조, 제34조	
	5	영화상영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화상영의 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2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재무과	1	구유 잡종재산의 관리 가. 실태조사 나. 대부료, 변상금 부과 및 징수 다. 미수액 체납관리 라. 기타전산입력 처리 등	- 지방재정법 제73조	
	2	물품불용 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가 3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 인천광역시서구물품관리조례 제16조 - 같은 조례 제17조 - 같은 조례 제18조	
세무1과 세무2과	1 2 3 4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 재산세 부과 징수 등록면허세(면허) 부과 징수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납세증명서 나.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다. 주택가격 확인서	- 지방세기본법 제79조 - 지방세법 제116조 - 지방세법 제35조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7조	
노인복지과	1 2 3	장례식장의 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영업자 등록현황 관리 나. 영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경로당 설치 등록 나. 경로당 변경, 휴·폐지 다. 경로당 운영지도 3 장사등에 관한 다음사항 가. 묘지등의 수급계획 수립 및 일제조사 나. 개인, 가족, 종중·문중을 대상으로 설치·관리하는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납골탑의 신고·허가 및 사후관리 다. 무연분묘의 개장 및 처리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등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노인복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5조, 제30조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제16조 - 같은 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위생과	1.	<p>공중위생영업(숙박, 목욕, 이용, 미용,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변경) 및 폐업</p> <p>나. 공중위생영업의 승계</p> <p>다. 공중위생영업소지도단속</p> <p>라. 관리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같은 법 제3조의2 - 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9조의2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2	<p>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제과점영업) 및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영업허가 등</p> <p>나. 영업 승계</p> <p>다. 출입·검사·수거 등</p> <p>라. 시정명령과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p> <p>마. 벌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위생법 제37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22조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75조까지, 제77조부터 제84조까지 - 같은 법 제93조부터 제102조까지 	
자원순환과	1	<p>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변경) 신고</p> <p>나.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관련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36조, 제45조, 제48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 같은 법 제39조 - 같은 법 제60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 그 밖에 폐기물 관리법에 관련된 규정 	
	2	<p>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변경) 신고</p> <p>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업체 지도감독 및 점검</p> <p>다.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p> <p>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운반차량등록 및 반입수수료 등에 관한 협약」 업무 등 기타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와 관련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부터 제19조까지, 제3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같은 법 제34조 - 같은 법 제61조,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 - 그 밖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규정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경제 에너지과	1	농지취득자격 증명발급	- 농지법 제8조	
	2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 분통지서 발급	- 농지법 제10조제1항	
	3	농지원부 작성 및 등본발급	- 농지법 제51조, 제52조	
	4	일반소유 상환초과농지 소유인정서 발급	- 농지법 시행령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6조제1항	
	5	대리경작자의 지정	- 농지법 제19조제1항	
	6	자경증명 발급	- 농지법 제5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 칙 제54조	
	7	농지검사 및 조사	- 농지법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 조	
	8	농지 전용신고	- 농지법 제37조제1항	
	9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전용 허가	- 농지법 제36조제1항	
기업지원과	1	공장입지 기준 확인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9조	
	2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신설, 증설, 업종 변경, 이전)승인 및 변경승인 나. 공장설립승인사항 변경 신고 다. 제조시설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라.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 변경신고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 제13조, 제20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의3 - 같은 법 제14조의3	
	3	공장설립등의 완료 신고	- 같은 법 제15조	
	4	공장등록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등록 및 등록변경, 부분등록 나. 건축물 등록 다.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 같은 법 제16조 - 같은 법 제16조의2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5	공장이전의 확인	- 같은 법 제21조	
	6	기존공장폐쇄 확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7	지식산업센터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신설, 증설 승인 및 변경승인 나. 완료(변경완료) 신고	- 같은 법 제28조의2 - 같은 법 제28조의2	
	8	공장설립대장 관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0조제4항	
	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나. 제조시설설치 승인취소 다. 공장의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의5 - 같은 법 제14조의4 - 같은 법 제17조	
	10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사항	- 같은 법 제55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건축과	1 2 3 4 5 6 7 8 9	1 위반건축물 단속 및 조치(고발포함)등(항측에 의한 위반건축물 제외) 2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3 동당 연면적 1,000㎡이하 건축물에 대한 허가 및 허가사항변경 4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신고사항변경 포함)신고의 수리 5 가설건축물 허가 및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및 관리 6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 7 건축(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착공신고의 수리 나. 사용승인서 교부 8 건축물 철거·멸실신고 수리 9 건축물대장 관리 및 등본발급	- 건축법 제79조, 제81조, 제82조 - 건축법 제80조, 제80조의2, 제113조 - 건축법 제11조, 제16조 - 건축법 제14조, 제16조, 제19조 - 건축법 제20조 - 건축법 제83조 - 건축법 제21조 - 건축법 제22조 - 건축법 제36조 - 건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도시재생 경관과	1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 광고물등의 표시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등에 관한 사항 라.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에 관한 사항 마.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바. 옥외광고업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사.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의 취소 아. 영업정지등에 관한 사항 자. 허가·신고·안전도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차. 과태료의 부과 징수 카.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동법시행령 제4조 내지 제8조 - 같은 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같은 법 제10조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및 제45조 - 같은 법 제17조 - 같은 법 제20조 - 같은 법 제20조의2	

[별표 4]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총무과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처리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 -같은 조례 제21조 -같은 조례 제22조 -같은 조례 제23조	
	2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 (다만,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다) 가. 주민등록증의 발급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나.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주민등록법 제24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세무1과	1	지방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세목별과세증명서 나. 지방세납세증명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지방세기본법 제63조	
장애인복지과	1	의료급여대상자 증명발급	-의료급여법 제8조제1항	
노인복지과	1	매·화장 및 개장신고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가정보육과	1	한부모가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저소득한부모가정 신규신청자 초기상담 나. 저소득 한부모가정 일제조사 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학비 지원, 변동사항 확인 라. 저소득 한부모가정 변동사항 관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자원 순환과	1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한 권한 가. 봉투판매소 지정 및 취소 나. 봉투판매소 변경사항 신고		
	2	동 배치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3	이면도로 청소업무	-폐기물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3조	
	4	주택가 무단투기 단속업무	-폐기물관리법 제7조, 같은 법 제63조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에 관한조례제17조 내지제25조	

의 건 수 렴 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 출 의 건	검 토 내 용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9 - 827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5. 13.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조직개편으로 신설 및 명칭 변경된 부서의 사무와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별표 3)
 -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재위임
 - 건설과 재위임 사무 중 4.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5. 하수도에 관한 점용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신설 부서 생태하천과로 개정하여 사무재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5월 24일까

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560-4042, 팩스 560-2703)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으로 신설 및 명칭 변경된 부서의 사무와 부서명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별표 3)
 - 건설과를 도시기반과로 재위임
 - 건설과 재위임 사무 중 4.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5. 하수도에 관한 점용 허가 및 감독 권한을 신설 부서 생태하천과로 개정하여 사무 재위임.

3. 참고사항

- 가. 개 정 안 : “별지 참조”
- 나. 신·구조문대비표 : “별지 참조”
- 다. 예 산 수 반 사 항 : “해당 없음”
- 라. 관계 법령 발취 : “해당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제2조관련)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도시기반과	1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24조	
노인복지과	1	공설묘지의 운영관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경제에너지과	1	양곡가공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대규모 도정업에 관한 권한제외) 가. 양곡가공업의 등록 및 신고 나. 청문 다.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권한 라. 과태료 부과징수	- 양곡관리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 같은 법 제21조	
	2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중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협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농지법시행령 제39조	
	3	불법농지전용에 관한 사항	- 농지법 제44조	
	4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권한	- 농지법 제38조	
기업지원과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 같은 법 제21조 - 같은 법 제28조	
	2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비법정단위 사용에 대한 단속 및 법정단위 표시의 명령 나. 계량기 제조업 등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 처리 다. 자체수리자의 지정 및 변경신고의 처리 라. 수입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처리 마. 폐업 등의 신고 수리 바. 등록·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 사. 정기검사 아. 수시검사 자.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차.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 취소 카. 정량의 표시 명령 및 표시의 정정 요구 타. 조사 파. 계량기 표시의 개선명령	- 「계량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 같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 - 같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 같은 법 제12조제1항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같은 법 제30조제1항 - 같은 법 제31조 - 같은 법 제32조제1항 - 같은 법 제33조제1항 - 같은 법 제42조제1항 - 같은 법 제50조제1항 - 같은 법 제52조제1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도시기반과	1	도로(점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단, 2개구이상 해당되는 점용허가는 제외) 가. 도로점용허가 나. 도로예정지 점용허가 다. 접도구역관리 라. 도로부지점용 권리·의무 승계신고 마.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 바. 도로점용지의 원상복구 면제승인 사. 도로점용공사의 대행 아. 공작물 설치허가(시도 및 준용도로에 한함) 자. 도로환경정비 차. 도로부지점용(굴착)허가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40조 - 같은 법 제10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제66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65조 - 같은 법 제61조 - 같은 법 제50조 - 도로법 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2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한 시설물자의 사용	- 자연재해대책법 제47조	
	3	도로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도로법」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제4호 중 차도·보도· 측도·배수로·길도랑 유지관리 나. 사도개설허가 다. 도로의 유지·안전점검·보수 등(도로, 비포장도로, 긴급복구, 설해대책)	- 도로법 제31조 - 사도법 제4조 - 도로법 제50조	
생태하천과	1	공공하수도의 유지와 공사 가. 폭 20M미만 도로의 하수도유지 및 공사관련 사항 나. 연면적 1,000㎡이하 건축허가에 따른 공공하수도 및 배수시설물의 사용 및 유지와 공사에 관련한 사항	- 하수도법 제7조 및 제8조	
	2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나. 공공하수도의 감독	- 하수도법 제20조 - 같은 법 제37조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 4.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 여부 6. 기타 문제점		
실·국(군·구)별 의견			
협약개요	실·국별	제출의견	검토내용

